

주요국의 사적연금 과세제도 연구

2022. 12.

홍범교 · 송은주 · 김효림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 범 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책임연구원

김 효 림 연구원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과세제도	12
1. 연금제도 체계	12
2. 사적연금제도	13
3.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	16
가. 납입금에 대한 과세	16
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19
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19
III. OECD 회원국의 사적연금 관련 현황	30
1. 노령인구비율 및 소득빈곤율	30
2. OECD 회원국의 과세제도	33
가. 과세체계	33
나. 과세제도	35
다. 사적연금 지원제도의 최근 동향	38
3. 사적연금 지급 규모 및 조세지원 수준	42
IV. 주요국의 사적연금 과세제도	46
1. 미국	46
가. 연금제도 체계	46

나. 사적연금제도	47
다. 사적연금 과세제도	51
2. 독일	65
가. 연금제도 체계	65
나. 사적연금제도	68
다. 사적연금 과세제도	75
3. 영국	83
가. 연금제도 체계	83
나. 사적연금제도	85
다. 사적연금 과세제도	92
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04
1. 국제비교	104
가. 사적연금제도	104
나. 사적연금 과세제도	106
2. 시사점	113
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113
나. 보조금 지급 등 비조세적 지원 도입 검토	120
참고문헌	123

표 목차

〈표 II-1〉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17
〈표 II-2〉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정 연혁	18
〈표 II-3〉 공적연금 과세체계	20
〈표 II-4〉 공적·사적 연금수령 시 소득세 과세규정	21
〈표 II-5〉 연금소득공제 금액	26
〈표 II-6〉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7
〈표 II-7〉 분리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 및 원천징수세율	28
〈표 III-1〉 OECD 회원국의 소득빈곤율	32
〈표 III-2〉 OECD 회원국의 퇴직저축에 대한 과세체계 유형(2021년)	34
〈표 III-3〉 개인 기여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가	36
〈표 III-4〉 OECD 회원국 중 비조세적 재정지원 국가(2021년)	38
〈표 III-5〉 GDP 대비 사적연금 지급 수준과 조세지원 수준(2017년)	45
〈표 IV-1〉 Traditional IRA와 Roth IRA 특징 비교	51
〈표 IV-2〉 401(k) 납입금 과세이연 한도	53
〈표 IV-3〉 401(k) 기여금 한도 연혁	55
〈표 IV-4〉 IRA 기여금 한도 연혁	57
〈표 IV-5〉 직장 퇴직연금 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기여금 공제	58
〈표 IV-6〉 소득에 따른 Roth IRA 기여금 한도(2023년)	59
〈표 IV-7〉 신고유형 및 소득별 Saver's Credit 적용률(2023년)	61

〈표 IV-8〉 미국의 신고유형별 개인소득세율(2023년)	63
〈표 IV-9〉 리스터연금 보조금 및 소득공제 한도 연혁	78
〈표 IV-10〉 독일 휘룸연금의 기여금 소득공제 비율	79
〈표 IV-11〉 독일 연금 개시연도별 연금급여(기타소득) 중 과세비율	81
〈표 IV-12〉 독일 연금 개시연도별 연금급여(근로소득) 중 연금공제 비율 및 보충 공제금액	82
〈표 IV-13〉 영국 사적연금 유형	87
〈표 IV-14〉 영국 NEST 기여율	89
〈표 IV-15〉 영국 민간부문 기업연금 평균(weighted-average) 기여율	90
〈표 IV-16〉 영국의 사적연금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 연혁	95
〈표 IV-17〉 영국 종합소득세율(2022/23 과세연도 기준)	98
〈표 IV-18〉 영국 사적연금 수령 방법 및 과세 방법	103
〈표 V-1〉 사적연금제도 국제비교	106
〈표 V-2〉 사적연금 납입금 과세제도(개인) 국제비교	109
〈표 V-3〉 사적연금 운용수익 과세제도(발생단계) 국제비교	110
〈표 V-4〉 사적연금 연금소득 과세제도 국제비교	112
〈표 V-5〉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조세지원 비교	114
〈표 V-6〉 사적연금 조세지원 대상 납입한도 비교	115
〈표 V-7〉 독일 리스터연금의 가입자 수	121
〈표 V-8〉 독일 리스터연금의 연간 소득구간별 기여금 납입자 수	121

그림 목차

[그림 I-1] OECD 회원국별 총부양비 비교	10
[그림 II-1] 우리나라의 연금체제	12
[그림 III-1] OECD 회원국의 노동인구(20~64세) 대비 노령인구(65세 이상) 수	31
[그림 IV-1] 미국의 연금체제	47
[그림 IV-2] 독일의 연금체제	67
[그림 IV-3] 영국의 연금체제	85

I. 서론

- 우리나라는 1994년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관련 제도를 수정해 오고 있음
 - 도입 초기에는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등의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환함으로써 형평성 제고 측면의 개편이 있었음
 -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개편과 더불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¹⁾
 - 이에 따라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한도를 종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른 과세상의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향후 전망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다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1.5명의 출산율을 유지하였으나 2021년 현재 0.81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음²⁾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2021년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하여 2021~2035년까지는 -0.1% 수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0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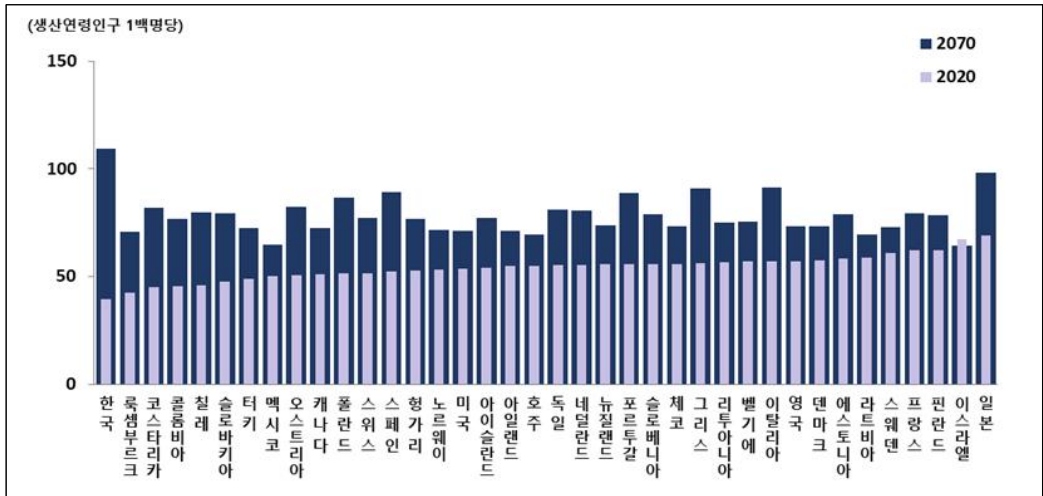
1) 관계부처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 6. 16., p. 16

2) KOSIS, 「시도/합계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heckFlag=N, 검색일자: 2023. 2. 15.

-1.2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³⁾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20년에 38.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2070년(116.8명)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림 1-1] OECD 회원국별 총부양비 비교



자료: 통계청(2021), p. 19

- OECD 자료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인구의 소득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인 13.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향후 노후빈곤층의 증가는 미래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를 의미하므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의 확대를 통해 미래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과세제도를 개인(근로자)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사적연금의 가입 확대 및 실질적인 노후소득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지원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3) 통계청(2021), pp. 1~19

4) OECD(2021b), p. 187; 201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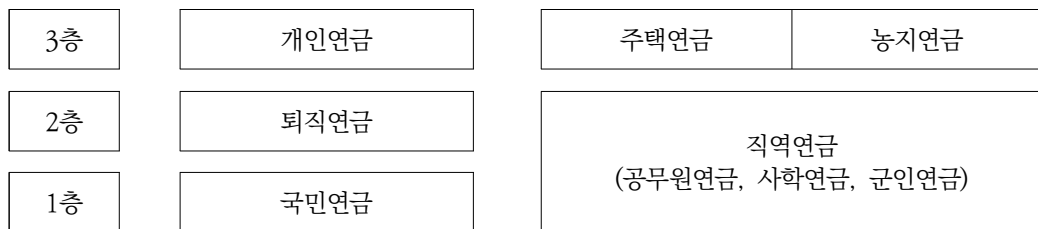
- 보고서는 제 I 장의 서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 및 사적연금 과세제도를 살펴봄
 -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OECD 회원국의 사적연금 과세체계 및 미국, 독일, 영국의 사적연금 과세제도를 살펴봄
 -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국 간 국제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함

II.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과세제도

1. 연금제도 체계

-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되어 있음⁵⁾
 - 국민연금은 1988년 1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점차 가입대상이 확대되었고, 2003년 1명 이상 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로 확대되었음
 -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임
 -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 2007년 주택연금, 2011년 농지연금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음
 - 퇴직연금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강제되는 것임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인연금은 자발적 가입에 의해 개인적으로 일정한 계약하에 가입하는 것이며, 주택연금과 농지연금도 개인연금의 한 종류에 해당함

[그림 II-1]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2021), p. 17

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2021), pp. 16~19

- 연금 유형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강제가입에 의한 공적연금에 해당하고, 그 외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사적연금에 해당함
- 퇴직연금은 종전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음

2. 사적연금제도

-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연금저축계좌)가 있음⁶⁾
-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및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가 있음⁷⁾
 - 이후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⁸⁾에 따라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표준형 DC제도가 추가되었고, 종전의 IRA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로 전환되었음
 -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음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⁹⁾
 -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함¹⁰⁾
 - 따라서 사용자(기업)가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 중 어떤 것을 설정하든 퇴직급여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6) 사적연금 중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7)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22), p. 21

8)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22), p. 20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임¹¹⁾
 -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는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된 제도임
 - 고용주(기업)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중 법으로 정해진 최소적립금 수준 이상의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운용함¹²⁾
 -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관계없이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음
 - 급여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임¹³⁾
 -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함
 - 적립금의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므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함
 - 근로자는 퇴직 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 IRP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써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임¹⁴⁾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12)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22), p. 22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0호

-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함¹⁵⁾
 -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은 제외함¹⁶⁾
-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¹⁷⁾ 연금저축펀드 및 계좌,¹⁸⁾ 연금저축신탁¹⁹⁾ 형태로 가입이 가능함²⁰⁾
- 연금저축계좌는 1994년 비과세형으로 도입한 ‘개인연금’에서 시작되어 2001년 세금우대형인 ‘연금저축’으로 과세제도가 변경되었고, 2013년에는 ‘연금저축계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²¹⁾
 - 1994년 도입한 개인연금은 연금형 저축상품으로 연금 납입 시 한도금액까지 소득 공제하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품이었으나, 2001년부터 신규가입은 중단되었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기존 세제의 적용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함
 - 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판매가 개시되었고 종전의 개인연금보다 소득공제 금액은 확대되었으나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3항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3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17)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18)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19)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20)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개요」, <https://advisor.fss.or.kr/pensionSaving/institutionInfo1.do>, 검색일자: 2023. 2. 5.

21) 이상우(2011. 7. 18.)

- 2013년 3월부터는 명칭이 연금저축계좌로 변경되었고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개정되었으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음

□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합해서 '연금계좌'라 하며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산정함

3.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

가. 납입금에 대한 과세

□ 종합소득(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²²⁾

□ 2022년까지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와 그 외의 거주자로 구분하여 한도액을 달리 규정함²³⁾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총급여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7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400만원)이 적용됨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7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300만원)이 적용됨

○ 200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납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 및 퇴직연금 납입 시 200만원의 추가한도 특례를 적용하였음

22) 「소득세법」 제59조의3

23) 임상엽·정정운(2021), p. 569

-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특례 적용을 배제함
-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소득 구분에 관계없이 9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으로 확대하였음
 - 50세 이상 개인에 대한 특례는 폐지됨
- 연금계좌 납입액은 거주자가 직접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은 제외함
- 세액공제대상 한도와 별도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임
-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2%를 적용함

〈표 II-1〉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구분	2022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미만	50세 이상 ¹⁾				
4,000만원 이하 (5,5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1억원 초과 (1.2억원)	700만원 (300만원)					

주: 1)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 지원을 위해 2020. 1. 1.~2022. 12. 31. 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다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자료: 기획재정부(2022), p. 61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종전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공제금액의 한도 확대가 있었으며, 주요 개정은 다음과 같음²⁴⁾
 -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공제율 12%로 규정하였으나 이후 2015년 보완대책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유도를 위하여 종합소득 4,000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2014년 연말정산부터 15%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였음
 - 2015년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 외에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시 연 300만원의 추가한도를 적용함
 - 2017년에는 고소득자(종합소득 1억원,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자)의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축소함
 - 2020~202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에게 연 200만원의 추가한도를 적용함
 - 종합소득 1억원,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함

〈표 II-2〉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정 연혁

시행연도	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율	개정취지
2014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400만원	- 종합소득 4천만원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 - 종합소득 4천만원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12%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유도
2015~2016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퇴직연금 적립 유도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700만원		과세형평성 제고
2017~2019	연금저축계좌	- 고소득자 ¹⁾ : 300만원 - 그 외: 400만원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700만원		
2020~2022	연금저축계좌	- 고소득자: 300만원 - 그 외: 400만원 - 50세 이상 ²⁾ : 600만원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700만원 - 50세 이상 ²⁾ : 900만원		

주: 1) 종합소득 1억원, 총급여 1.2억 초과자

2) 고소득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자료: 전병목·김도형(2022), pp. 26~27; 전병욱(2022), pp. 155~256을 기초로 정리

24) 전병목·김도형(2022), pp. 26~27

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 연금계좌 적립금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연금의 수령 단계에서 과세되므로 수령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됨

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1)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함²⁵⁾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²⁶⁾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이하 '사적연금소득')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과세 대상 소득금액

-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함

25)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26)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봄(「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는 2001년 이전에는 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급여 수령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었으나, 2002년부터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급여 수령 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음

〈표 II-3〉 공적연금 과세체계

구분		2001년 이전	2002년 이후
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불인정	전액 소득공제
급여 수령 시	연금으로 수령	과세 제외	연금소득으로 과세
	일시금으로 수령	과세 제외	퇴직소득으로 과세

자료: 임상엽·정정운(2021), p. 435

- 사적연금소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²⁷⁾(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²⁸⁾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을 말함²⁹⁾
 - 퇴직소득이 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②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퇴직 당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이하 '이연퇴직소득')³⁰⁾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³¹⁾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³²⁾
 -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

27) 2012년 이전에 계약한 연금저축 또는 퇴직보험계좌는 2013년 이후 연금계좌로 봄

28)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확정기여금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와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임. 이는 거주자가 퇴직연금계좌 적립금을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거주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해당 계좌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29)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30)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31) 2014년 1월 1일 이후 종전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개정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봄

32) 연금보험료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위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연된 금액

- 연금계좌 인출금 중 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납입액 및 운용실적 증가액은 과세대상이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과세대상 금액은 인출 형태에 따라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금의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실적 증가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표 II-4〉 공적·사적 연금수령 시 소득세 과세규정

연금유형	과세 범위		인출형태	
			연금수령	연금 외 수령
공적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으로 과세
사적연금	과세 대상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으로 과세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¹⁾ , 운용실적 증가액 ²⁾ 및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입금되어 과세가 이연된 금액	연금소득으로 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
	과세 제외	세액공제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주: 1) 2014.1.1. 이후 종전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개정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봄
 2) 연금보험료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연된 것임
 자료: 임상엽·정정운(2021), pp. 435~437

-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임³³⁾,³⁴⁾
 - 연금저축계좌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임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34) 연금계좌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한 연금저축(또는 퇴직보험) 계좌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봄. 여기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한 연금저축(구 연금저축)이란 ① 저축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② 저축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저축임

- 즉,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임
-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임
 - 이는 거주자가 퇴직연금계좌 적립금을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거주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해당 계좌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임³⁵⁾
 - 사용자의 사외적립자산에 속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는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함³⁶⁾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금액을 납입할 것^{37), 38)}
 - 연간 1,800만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특례에 따른 전환금액
 - 전환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³⁹⁾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함
 -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함

35) 임상엽·정정운(2021), p. 437

36)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37)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38)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특례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함

3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연금수령’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의료 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요건을 갖추어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밖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함⁴⁰⁾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⁴¹⁾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 다만,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함)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세기간 개시일⁴²⁾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이 경우,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1년차)로 하여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함⁴³⁾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음⁴⁴⁾
 -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피상속인(배우자)의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의 기산 연차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임

40)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41)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의미함

4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4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44) 연금수령연차≤10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의 경우 기산연차는 6년차임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봄⁴⁵⁾
-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① 과세제외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봄⁴⁶⁾
- 과세제외금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봄
 - ①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 ②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전환금액⁴⁷⁾
 - ③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④ 상기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봄⁴⁸⁾
-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봄⁴⁹⁾
 - 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소득의 원천이 계좌 간 다름)
 -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또는 퇴직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않음⁵⁰⁾

45)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

46)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2항

47) 2022년 2월 15일 신설

48)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

49)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임상엽·정정운(2021), p. 440

50)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 ②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연금수령연차가 다름)
 - ③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전부 이체만 허용)
 - ③을 제외한 ①과 ②를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봄⁵¹⁾
 -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을 적용함
 -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⁵²⁾
-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연금소득임⁵³⁾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공적연금 관련법에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2) 연금소득 과세방법⁵⁴⁾

-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함⁵⁵⁾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3항

5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

5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54) 임상엽·정정운(2021), pp. 443~446을 참고하여 작성함

55)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

- 총연금액은 연금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 연금소득 공제액은 다음 표와 같으며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함⁵⁶⁾

〈표 II-5〉 연금소득공제 금액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자료: 「소득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⁵⁷⁾
 -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요건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함⁵⁸⁾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은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연금 실제 수령연차⁵⁹⁾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가정 시 원천징수세율⁶⁰⁾의 70%

56) 「소득세법」 제47조의2 제1항

57)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58)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의2호, 5의3호

59)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함.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 ①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
- ②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인출로 보지 않는 특례에 따른 이체의 경우: 위 ①에 따라 계산한 연금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에 따라 계산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가정 시 원천징수세율의 60%
-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55세 이상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의 세율을 적용함
-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은 4%임
 -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증도해지할 수 없는 계약임

〈표 II-6〉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분	원천징수세율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실제 수령연차¹⁾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가정 시 원천징수세율²⁾ × 70% - 10년 초과인 경우: 연금외수령 가정 시 원천징수세율²⁾ × 60%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 이상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p style="text-align: center;">사망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4%</p>

주: 1)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2)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했다고 가정할 때 (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한 금액)
 3) 세율의 적용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
 자료: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의2호, 5의3호

□ 사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나,⁶¹⁾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됨⁶²⁾

- 60)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조 제2항)
- 61)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연말정산으로 과세종결함

- 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②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인출요건⁶³⁾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임
- 상기 외의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적용할 수 있음

〈표 II-7〉 분리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 및 원천징수세율

구분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무조건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연금외수령 가정 시 원천징수세율 × 70%·60%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인출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나이에 따라, 5%·4%·3% - 종신연금: 4%
선택적 분리과세	상기 외의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임상엽·정정운(2021), p. 445

62)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63)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인출요건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① 의료목적 인출요건: 연금수령요건(연금수령한도 요건은 제외)을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본인 의료비에 한정)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해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② 부득이한 인출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 천재지변
 -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함)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2022년까지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⁶⁴⁾
 - 분리과세 시 적용 세율은 15%임
 -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함

3) 연금외수령 시 과세 방법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한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1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과세방법은 무조건 분리과세임⁶⁵⁾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 퇴직소득이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지급받는 소득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말함
 -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함⁶⁶⁾
 -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지만,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고(원천징수하지 않음) 연금계좌에서 그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함)을 인출할 때 소득세를 납부함
 - 즉,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금외수령하면 퇴직 시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것임

64) 기획재정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subList.do?comBaseCd=DIFGODEPRT&difGovDepart1=DIFGODR001>, 검색일자: 2023. 2. 17.

65)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음

66) 기본세율을 적용함

III. OECD 회원국의 사적연금 관련 현황

1. 노령인구비율 및 소득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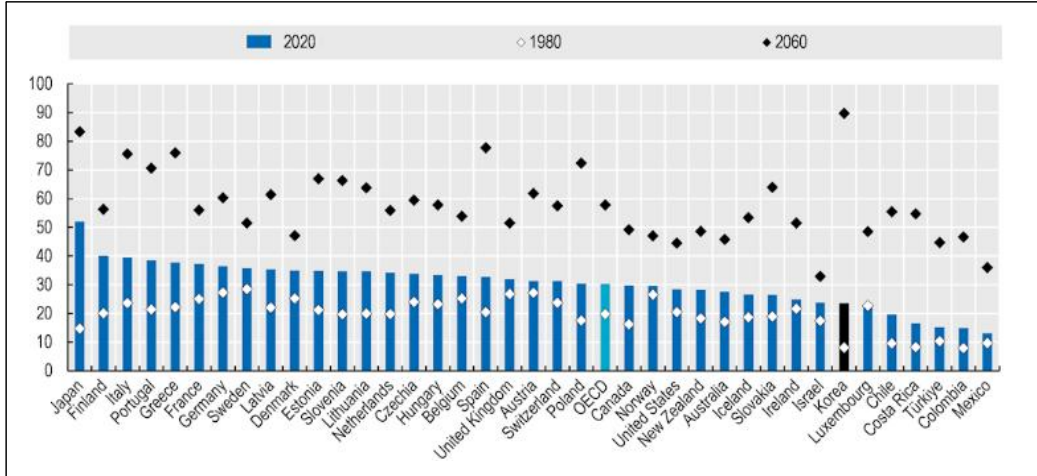
- OECD 회원국 대부분이 2020년 대비 2060년 노동인구 대비 노령인구 수가 많이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제도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⁶⁷⁾
- 특히 한국의 출산율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1990년대 초 여성 1인당 약 1.57명으로 급감하였고 2021년 0.81명으로 현재까지 계속 감소 추세임⁶⁸⁾
- 2020년 현재 한국의 노령인구(65세 이상)는 노동인구(20~64세) 100명당 23.6명으로 OECD 평균인 30.4명, 일본의 52.0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60년에는 89.7명(일본 83.3명)으로 OECD 평균 57.8명보다 훨씬 높아질 예정임

67) OECD(2022b), p. 18

68) 통계청(2021. 12. 9.), p. 24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출산율	4.53	2.82	1.57	1.48	1.09	1.23	1.24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그림 III-1] OECD 회원국의 노동인구(20~64세) 대비 노령인구(65세 이상) 수



자료: OECD(2022b), p. 19

-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빈곤율은 43.4%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총인구빈곤율(16.7%)과 노인빈곤율의 격차도 가장 크게 나타남⁶⁹⁾
-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도 30%를 초과하여 OECD 평균인 12.1%에서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호주,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은 20% 이상으로 조금 높은 수준임
 - 한편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는 빈곤율이 5% 미만으로 가장 낮은 국가임
-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총인구빈곤율보다 27%p 높고 라트비아(21.5%p)와 에스토니아(21.3%p)가 그다음으로 큰 격차를 보임
 - 한편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은 노인빈곤율이 총인구빈곤율보다 최소 4%p 더 낮음

69) OECD(2021b), p. 186

〈표 III-1〉 OECD 회원국의 소득빈곤율

(단위: %)

국가	노령인구			전체 인구	국가	노령인구			전체 인구
	전체	66~ 75세	76세 이상			전체	66~ 75세	76세 이상	
호주	23.7	21.6	27.1	12.4	한국	43.4	34.6	55.1	16.7
오스트리아	10.0	10.6	9.2	9.4	라트비아	39.0	33.4	44.7	17.5
벨기에	8.5	7.1	10.3	8.2	리투아니아	25.2	23.3	27.1	15.5
캐나다	12.3	10.2	15.7	11.6	룩셈부르크	7.1	6.7	7.9	11.4
칠레	17.6	17.7	17.4	16.5	멕시코	26.6	23.9	31.0	15.9
코스타리카	17.0	16.4	17.8	20.5	네덜란드	3.1	2.0	4.9	8.3
체코	10.4	9.4	12.2	6.1	뉴질랜드	10.6	7.7	15.2	10.9
덴마크	3.0	2.0	4.5	6.1	노르웨이	4.3	2.5	7.2	8.4
에스토니아	37.6	28.8	47.5	16.3	폴란드	12.8	13.4	11.9	9.8
핀란드	7.2	4.3	11.3	6.5	포르투갈	9.0	8.0	10.2	10.4
프랑스	4.4	4.0	4.9	8.4	슬로바키아	5.0	4.5	6.0	7.7
독일	9.1	9.6	8.8	9.8	슬로베니아	12.1	9.6	15.9	7.5
그리스	7.5	7.2	7.7	12.1	스페인	10.2	9.2	11.3	14.2
헝가리	4.9	5.3	4.2	8.0	스웨덴	11.4	8.5	15.4	9.3
아이슬란드	3.1	4.0	1.1	4.9	스위스	16.5	14.0	19.6	9.2
아일랜드	7.4	6.4	7.5	7.4	튀르키예	11.1	9.0	14.6	14.4
이스라엘	20.6	16.8	26.4	16.9	영국	15.5	12.8	19.2	12.4
이탈리아	11.3	10.4	12.2	14.2	미국	23.1	19.7	28.3	17.8
일본	20.0	16.4	23.9	15.7	OECD	13.1	11.4	15.3	11.3

주: 1.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2018년 수치임. 콜롬비아는 제외함
 2. 소득빈곤율은 가계 가처분소득 중앙값의 50% 미만 소득자의 비율임
 자료: OECD(2021b), p. 187

2. OECD 회원국의 과세제도

가. 과세체계

- OECD 회원국은 개인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 및 비조세 형태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일반적인 저축은 세후소득에서 납부가 이루어지고, 납부금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인출금(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TTE (과세-과세-면세) 형태임
 - 그러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저축에 대한 과세와는 다른 과세방식을 취함으로써 간접지원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과세방식은 EET(면세-면세-과세) 형태임
 - 이는 조세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매칭기여금(matching contribution)이나 보조금을 개인의 연금계좌로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형태의 비조세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함

- 많은 국가들이 퇴직저축(retirement savings)에 대해, 기여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고 인출 시점에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EET(면세-면세-과세) 방식의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에 따라 기여금, 운용수익, 연금소득이 모두 과세 면제되는 EEE 방식을 적용하기도 하고 세 가지 현금흐름 중 두 가지 현금흐름에 세금을 부과하는(ETT, TET, TTE)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각 국가의 퇴직저축에 대한 과세체계를 납입-운용-인출 각 단계에서의 과세 또는 과세면제 여부에 따라 EET, ETT, TET, TTE, TEE, EEE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짐

- 예를 들어, 사적연금에 대한 기여금의 과세는 기여금의 출처(개인 또는 고용주), 기여금의 성격(의무적 또는 자발적), 지급되는 연금의 유형(개인 또는 직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조세지원을 적용하는 기여금의 한도금액도 기여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때는 사적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함

〈표 III-2〉 OECD 회원국의 퇴직저축에 대한 과세체계 유형(2021년)

과세방식 ¹⁾	대상 국가
EET(18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한국
ETT(4개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TET(3개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TTE(3개국)	호주, 뉴질랜드, 튀르키예
TEE(7개국)	코스타리카,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EEE(3개국)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주: 1. OECD 자료에서는 한국을 TET 방식으로 분류하였으나,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EET 방식으로 재분류함

1) 'T'는 과세, 'E'는 과세면제를 의미하며, 납입, 운용, 인출의 각 단계에서의 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의미함

자료: OECD(2021a), p. 5

- 사적연금제도에서 발생한 운용(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를 면제함
 -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매년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출 시에만 과세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세율은 투자 기간, 자산 유형 또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는 연금 가입자가 사적연금제도에 적립할 수 있는 총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종신연금, 분할수령 및 일시수령 등) 동일하게 과세함
 - OECD 회원국 중 4개국(체코, 에스토니아, 한국, 튀르키예)만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연금소득을 분할수령하거나 더 장기적으로 인출할 것을 권장함
 - 한편, 일시수령은 누진세율로 인한 실효세율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되거나 일부만 과세함
 - 일부 국가들은 과세 제도를 통해 조기인출을 금지하고 있음

- EET 방식은 OECD 38개 회원국 중 18개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어 가장 일반적인 과세방식임
 - 기여금과 투자소득은 과세면제하고 인출금(연금소득)은 과세하는 방식임
 - 적용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한국임
 - 다만, 이들 국가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별로 운영상의 차이는 있음

나. 과세제도

- 사적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은 납입단계, 운용단계, 인출단계에서 각각 이루어질 수 있음

- 납입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함
 -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지원 방식에 해당하며 세액공제 방식은 기여금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임

- 기여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한국, 미국이 있음

- 세액공제율은 이스라엘이 35%로 가장 높고 벨기에와 핀란드가 30%, 에스토니아 20%이며,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13.2%와 16.5%의 공제율을 적용함
- 미국은 일반적으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나 Roth 제도인 경우에는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또한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세액공제(Saver's credit)를 추가로 적용함

〈표 III-3〉 개인 기여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가

국가	연금제도	과세방식		
		납입단계	운용단계	인출단계
벨기에	VAPW(근로자)	C: 30%	E: 9.25% ²⁾	T: 10%/33% ³⁾
	POZ(자영업자)	C: 30%	E: 9.25% ²⁾	T: 10%/33% ³⁾
	개인연금	C: 30%/25% ¹⁾	E: 9.25% ²⁾	T: 8%/10% ⁴⁾
에스토니아	사적연금	C: 20% ⁵⁾	E	E
핀란드	사적연금	C: 30%	E	T: EUR 30,000까지 30% 초과분 34%
이스라엘	사적연금	C: 35% ⁶⁾	E	E
한국	사적연금	C: 13.2%/16.5%	E	T/PE
미국	Roth	T+C(0~50%)	E	E
	Other	E+C(0~50%)	E	T

주: 1. C: 세액공제, E: 과세면제, PE: 일부 과세면제

1) 30%: 납입한도 EUR 990, 25%: 납입한도 EUR 1,270, 납입한도는 2021년 적용 금액임

2) 투자수익은 일반적으로 과세면제이나 연간투자수익률이 보장수익률보다 클 때, 연간 수익을 지급하는 부분은 9.25%로 과세함

3) 법정 은퇴연령(67세) 이후 인출 시 10%, 그 외 인출 시 33%

4) 일시납 연금계좌는 8% 장기저축 생명보험은 10%

5) 납입한도: 총소득의 15% 또는 EUR 6,000

6) 공제한도: 급여의 7%, 기여금 한도: 전국 평균 급여의 20.5%

자료: OECD(2021a), pp. 6~8

- 기여금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조세지원방식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한도금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함⁷⁰⁾

70)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지만, 개인(근로자)이 납입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를 적용함

-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캐나다, 이탈리아, 라트비아, 스페인, 영국, 미국 등임⁷¹⁾
 - 이탈리아는 고용주 부담과 근로자 부담을 합하여 연간 EUR 5,164.57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율로 과세함
 - 라트비아는 법정기여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과세면제이나, 자발적 기여금은 과세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함
 - 스페인의 개인 기여금 공제한도는 순소득의 30%와 EUR 2,000 중 적은 금액이며, 세제적격 기업연금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기여금의 합산 공제한도는 연간 EUR 10,000임
 - 포르투갈은 개인연금에 납부한 근로자 기여금의 20% 공제 가능하며, 연간 공제 금액 한도는 연령에 따라 35세 미만 EUR 400, 35~50세 EUR 350, 50세 초과 EUR 300임
 - 체코는 CZK 12,000을 초과하는 기여금에 대해서 연간 CZK 24,000까지 공제 가능함

- 납입단계에서 개인이 부담한 기여금에 추가하여 고용주 및 정부가 매칭기여금(matching contributions)과 정부보조금(subsidies)을 지원하는 비조세적 지원제도는 OECD 회원국 중 15개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음
 - 이는 저소득층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정책으로, 사적연금제도에 실제로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개인에게 제공됨
 - 고용주 매칭기여금을 제공하는 국가는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미국임
 - 정부 매칭기여금을 제공하는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콜롬비아, 체코, 헝가리, 멕시코, 뉴질랜드, 튀르키예, 미국임
 -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는 칠레, 독일, 리투아니아,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임

71) OECD(2021a), pp. 12~105

〈표 III-4〉 OECD 회원국 중 비조세적 재정지원 국가(2021년)

지원방식	해당 국가
고용주 매칭기여금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미국
정부 매칭기여금 (매칭률)	호주(50%), 오스트리아(4.25%), 칠레(50% 또는 15%), ¹⁾ 콜롬비아(20%), 체코(20%), 헝가리(20%), 멕시코(325%), ²⁾ 뉴질랜드(50%), 튀르키예(25%), 미국(50%, 또는 100%) ³⁾
정부보조금	칠레, 독일, 리투아니아,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주: 1) 칠레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것(50%)과 자발적 납부(15%)를 위한 것의 2가지 매칭 프로그램이 있음

2) 멕시코의 정부 매칭기여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에 한해 적용함

3) 미국의 정부 매칭기여금은 연방 근로자를 위한 Thrift Savings Plan임. 근로자 기여금의 3%는 100% 매칭이고, 그다음 2%는 50% 매칭임

자료: OECD(2021a), p. 8

□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ETT 및 TTE 과세체계 방식인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튀르키예에서는 운용수익 단계에서 과세함

□ 인출(연금수령)단계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면제 또는 부분적 과세하거나 저율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함

○ 납입단계에서 과세면제(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대부분 인출 단계에서 과세 또는 부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다. 사적연금 지원제도의 최근 동향

□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 튀르키예에서는 최근 비조세적 재정지원이 있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⁷²⁾

72) OECD(2021a), p. 11

- 독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 ‘단체협약에 의한 DC형 기업연금제도(occupa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s per collective agreement)’를 시행함⁷³⁾
 - 기존 독일의 기업연금은 DB형 위주이고 DC형으로는 원금(최저수익률 0%) 보장형 DC형 기업연금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노동조합 등을 통해 가입한 경우 원금 보장을 하지 않는 DC형 제도를 운영하게 됨
 - 또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여 직역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 plan)에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연소득(또는 이연보상이라 함, deferred income)의 15%를 연금제도에 납입해야 함
 - 그 외에도 고용주가 저소득 근로자(월 EUR 2,575 이하 소득자)를 대신하여 직역연금제도에 매년 최소 EUR 240를 납부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 지급 외 기여금(최대 EUR 960)의 30%까지 국가보조금(또는 세금 환급) 형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74), 75)}
- 리투아니아는 2019년 1월부터 자동등록제도(automatic enrolment scheme)를 도입하여, 총소득의 최소 3%를 기여하는 개인에게 정부가 리투아니아의 직전 연도 평균 총급여의 1.5%를 기여함
- 폴란드는 2019년에 도입한 자동등록제도에 따라 개인은 고용주의 매칭기여금과 정부보조금으로부터 혜택이 있음
 - 고용주는 임의가입 기업연금인 PPE(Employee pension funds) 기여금을 납입하며, 이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됨
 - 정부는 개인이 임의가입 기업연금인 PPK(Employee capital plans)에 가입 시 계좌에 PLN 250을 지급하고 매년 PLN 240을 납부하고, 연금계좌에서 조기 인출하는 경우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은 환급됨

73) Bäcker(2017. 1.)

74) Deutscher Bundestag(2017), p. 68; p. 120

75) BMAS, “Förd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https://www.bmas.de/DE/Soziales/Rente-und-Altersvorsorge/Zusaetzliche-Altersvorsorge/Betriebliche-Altersversorgung/foerderung-betriebliche-altersvorsorge.html>, 검색일자: 2023. 2. 14.

- 튀르키예는 2017년에 도입한 자동등록제도에 따라, 정부가 연간 최저임금의 25%를 한도로 개인연금 기여금의 25%를 매칭함
 - 또한 첫 두 달 이내에 탈퇴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TRY 1,000을 기여금으로 1회 지급하고, 최소 10년 연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퇴직 시 저축액의 5%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함

- 호주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개인의 초과기여에 불이익을 주는 초과기여 부담금을 폐지하였음
 - 호주는 기여금 한도액까지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기여금 상한은 AUD 27,500 (2021년 7월 1일부터)이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최대 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초과 기여금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기여금은 15%의 세율 대신 개인의 한계 소득세율로 과세할 뿐만 아니라 초과기여에 대한 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했음(2021년 6월까지 적용)
 - 그러나 2021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는 부담금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함

- 벨기에에는 2019년에 직역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 plan)가 적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개인연금제도(personal pension scheme)를 도입하였음
 - 개인의 기여금에 대해 30%의 환급불가능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투자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정 퇴직연령 시 10%의 세율로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임

- 덴마크는 연금저축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소득연계 정부연금 및 주거 지원과의 상호작용 문제를 피하기 위해 2018년에 추가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음
 - 연금저축은 저축한도금액까지 퇴직 전 15년간 저축 시 22%의 추가 세금면제 혜택이 있었고, 퇴직까지 저축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8%의 추가 세금면제 혜택이 있었음

- 2020년에는 추가 세금면제율이 각각 32%, 12%로 높아졌고, 이는 세금면제율이 100%가 아닌 기여금의 132% 또는 112%임을 의미함
- 에스토니아는 2021년에 의무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개인에게 종신연금(life annuities)과 평균잔여수명에 걸쳐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과세면제함
 - 종전에는 퇴직급여에 대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20%의 세율로 과세하였음
- 이탈리아에서는 2017년부터 연간 EUR 3,000까지 직원에게 부여되는 성과상여금이 지역연금 기여금 등의 복지 관련 비용에 사용될 경우 개인소득세가 면제됨
- 다음 국가에서는 기여금 한도 확대 및 인출금의 과세소득 범위 조정 등의 개정이 있었음
 - 체코는 2017년 1월 1일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기여금을 연간 CZK 12,000에서 CZK 24,000으로 인상하고,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고용주 기여금을 CZK 30,000에서 CZK 50,000으로 인상하였음
 - 슬로베니아에서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저축의 일시금 인출 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스페인은 2021년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여금 합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EUR 8,000에서 EUR 10,000으로 늘렸으나 개인의 기여금은 EUR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 국가에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였음
 - 호주는 2017년 7월부터 15% 세율을 적용하는 기여금 한도를 축소하고 비과세 투자수익을 퇴직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금액에 AUD 160만의 상한선을 도입함으로써 고소득층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었음
 - 헝가리에서는 2019년 이후부터 자발적 연금기금 및 지역연금의 기여금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이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고용주가 기여할 인센티브가 감소하였음

- 일본은 2020년 공적연금 이외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연금 수급자에 대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에 적용되는 연금의 세액공제 수준을 축소하였음
- 라트비아는 2019년에 자발적 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였음
- 리투아니아는 2019년에 공제 가능한 자발적 개인연금 기여금과 생명보험료(life insurance premium)의 상한을 EUR 2,000에서 EUR 1,500으로 인하하였음
- 뉴질랜드는 2021년에 근로자가 벌어들인 급여 총액이 NZD 216,000을 초과할 때 고용주 기여금에 대해 39%의 새로운 세율 적용을 도입하였음

3. 사적연금 지급 규모 및 조세지원 수준

- 사적연금은 OECD 회원국 중 많은 국가에서 노사협정을 통해 의무적이거나 거의 준의무적인 제도로 운영 중이며 보편적인 보장 범위를 제공하고 있음
 - 사적연금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연금과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업 연금을 포함함
- 2021년 OECD 발표 자료⁷⁶⁾에 따르면, 사적연금 지급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OECD 평균으로 1.5%이고 이는 2005년 1.2%에 비해 0.3%p 증가한 규모임
 - OECD 회원국 중 사적연금 지급액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네덜란드로 2017년 기준 GDP 대비 5.6%이며, 그다음으로는 캐나다(GDP의 5.5%), 미국과 스위스(GDP의 5.3%), 영국(GDP의 5.3%) 순임

76) OECD(2021b), pp. 200~201

- 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는 의무가입이지만 사적연금 지급액에는 자발적 개인 연금 지급액도 포함된 수치임
 - 영국은 의무적 연금과 자발적 연금 지급액을 합한 수치임
 - 지급액 규모가 중간 수준에 속하는 국가인 호주, 아이슬란드, 스웨덴의 GDP 비중은 각각 5.0%, 4.1%, 3.1% 수준임
 - 일본은 사적연금 지급액이 GDP의 2.6%로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0.7%로 OECD 평균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나 2000년 0.5%보다 0.2%p 상승하였음
- 1990년대에 호주, 에스토니아,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의무적인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특히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고 주로 젊은 근로자들이 가입하였으며, 그들 중 대부분 아직 급여 지급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임
 - 이후 폴란드에서는 의무적인 사적연금제도를 폐지하였고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자발적인 연금제도로 변경되었음
 - 호주와 스웨덴의 지급액 규모는 현재의 강제적 사적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자발적 및 준 강제적 제도에서 발생한 것이며, 현재의 의무적 사적연금제도에 의한 지급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할 것임
- 2000년에 비해 2017년에 사적연금 지급액의 GDP 대비 비중이 1%p 이상 증가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미국임
- 호주와 스위스는 기업연금이 각각 1993년과 1985년에 의무화되어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음
 - 은퇴자들이 평균적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이 더 길어짐에 따라 사적연금 혜택의 급속한 성장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OECD에서 사적연금은 1990년에 총 연금지출의 10%를 차지했으며 2000년에는 15%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그 비율이 대체로 안정적이었음

- 사적연금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은 조세지출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음⁷⁷⁾
 - 퇴직저축에 대한 조세지출 자료가 가능한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23개 국가이며, 대체로 0.2% 이하로 낮은 수준임
 - 호주,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등 6개국은 GDP의 1% 이상으로 OECD 평균인 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지원 수준이 높은 국가임
 -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GDP 비중은 OECD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2018년 기준으로 산출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금액은 GDP 대비 0.05% 수준임⁷⁸⁾

77) 조세지출의 수치를 사용하는 데 주의할 점은 각 국가의 조세제도 체계의 차이로 인해 국가 간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임

78)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22), p. 344, 2018년 GDP 1,893조원, 세액공제 0.9조원을 기초로 산출하였음

〈표 III-5〉 GDP 대비 사적연금 지급 수준과 조세지원 수준(2017년)

(단위: %)

국가	제도 유형	지급액 GDP 비중		조세지출 GDP 비중
		2000년	2017년	
호주	m	2.9	5.0	2.1
오스트리아	v	0.6	0.7	0.0
벨기에	v	1.3	1.1	0.2
캐나다	v	3.9	5.5	2.2
칠레	m	1.1	1.5	0.2
콜롬비아	m	n.a.	0.4	n.a.
코스타리카	m	n.a.	0.2	n.a.
체코	m	0.2	0.4	n.a.
덴마크	q/m	0.0	1.8	n.a.
	v	2.4	0.6	n.a.
에스토니아	n.a.	n.a.	n.a.	0.7
핀란드	v	0.3	0.2	0.0
프랑스	v	0.3	0.3	0.1
독일	v	0.7	0.8	1.1
그리스	v	0.0	0.1	n.a.
헝가리	n.a.	n.a.	n.a.	0.1
아이슬란드	m	2.3	4.1	0.0
아일랜드	v	2.8	1.0	0.3
이스라엘	v	0.7	1.3	1.2
이탈리아	v	1.1	1.1	0.1
일본	m	0.4	0.3	n.a.
	v	2.8	2.2	n.a.
한국	m	0.5	0.7	n.a.
라트비아	n.a.	n.a.	n.a.	0.1
멕시코	n.a.	n.a.	n.a.	0.2
네덜란드	q	4.5	5.6	n.a.
노르웨이	v/m	0.6	1.0	0.3
포르투갈	v	0.2	0.6	0.0
슬로바키아	v	0.2	0.3	n.a.
슬로베니아	n.a.	n.a.	n.a.	0.6
스페인	v	0.0	0.4	0.0
스웨덴	q/m	1.7	3.1	n.a.
스위스	m	4.0	5.3	1.3
영국	m	0.4	0.7	0.9
	v	5.4	4.6	
미국	v	3.7	5.3	1.0
OECD		1.2	1.5	0.5

주: m: 의무제도, v: 임의가입, q/m: 준의무제도, n.a.는 자료 없음
 자료: OECD(2019b), p. 201

IV. 주요국의 사적연금 과세제도

1. 미국

가. 연금제도 체계

- 미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1층 공적연금,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의 3층 연금 체계를 갖고 있음⁷⁹⁾
 - 1층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제도에는 노인·유족·장애 연금(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이하 ‘OASDI’)과 공무원, 철도직원 등 특정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제도가 있음
 - OASDI는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내 거주하고 사회보장세를 10년 이상 납입한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의무적용됨
 - 2층과 3층에 해당하는 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임
 - 2층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이하 ‘ERISA’)에 따라 DB형(Defined Benefit Plan, 이하 ‘DB형’)과 DC형(Defined Contribution Plan, 이하 ‘DC형’)의 두 가지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3층에 해당하는 개인퇴직계좌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 공무원 등의 직업과 관계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적립계좌임

79) 류건식·강동호·김동겸(2022), pp. 377~378을 기초로 요약 정리함

[그림 IV-1] 미국의 연금체계

3층	개인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A)			
2층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공무원 부가직역 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1층	사회보장연금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OASDI)			

자료: 류건식·강동호·김동겸(2022), p. 377

나. 사적연금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인 기업연금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제공되고 그 외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개인퇴직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⁸⁰⁾
- ERISA는 확정급여형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제도(DC형)를 기본적인 퇴직연금 제도로 규정함
 - 401(k)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대표적인 형태로, 적립금은 고용주 납입금과 근로자 본인의 추가 납입금으로 이루어짐
- 개인퇴직계좌(IRA)는 가입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됨
 - Traditional IRA와 Roth IRA는 대부분 근로자가 개설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임
 -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s IRA)는 소기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제도임⁸¹⁾

80) 홍범교·송은주·박수진(2013), pp. 61~63

81)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SEP 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조건은 21세 이상인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지난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하고 고용주가 1년에 최소 600달러 이상을 근로자의 SEP IRA에 납입해 줄 수 있어야 함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이 우선 확정되고 그 지급액에 필요한 납입액을 산출하여 적립하는 제도임⁸²⁾
 - 따라서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고정 급여에 따라 산출된 기여금을 고용주가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주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유지비용이 발생함
 - 확정급여형의 경우 고용주만 기여금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택에 의해 근로자도 기여할 수 있음
 -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의 대표적인 예는 연금신탁제도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납입금이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수급액은 납입금의 적립수준과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401(k)⁸³⁾임
- 401(k)에는 Traditional 401(k), safe harbor 401(k), SIMPLE 401(k), Solo 401(k)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별로 해당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⁸⁴⁾
 - Traditional 401(k)는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선택적 이연을 통해 연금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음

82) IRS, "Defined Benefit Plan,"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defined-benefit-plan>, 검색일자: 2023. 1. 19.; 류건식·강동호·김동겸(2022), pp. 378~383

83) 미국 내국세입법(IRC) 조문의 이름을 따서 401(k) 및 403(b)라 하며, 401(k)는 민간영리기업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이고, 403(b)는 비영리조직 및 정부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제도임

84) IRS, "401(k) Plan Overview,"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sponsor/401k-plan-overview>, 검색일자: 2023. 1. 31.

- 고용주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거나 직원의 선택적 이연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할 수 있음
 - 선택적 이연(elective deferral)이란 근로자의 선택으로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의미함
 - safe harbor 401(k)는 근로자의 선택적 이연과 관계없이 모든 적격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주가 기여금을 납부하는 제도임
 - SIMPLE 401(k)는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임
 - 중소기업이란 전년도에 고용주로부터 최소 USD 5,000의 급여를 받은 직원이 100명 이하인 기업임
 - Solo 401(k)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401(k)임⁸⁵⁾
- 401(k)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급여의 일정 비율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회사가 이에 매칭해 주는 방식임
- 근로자의 기여율이나 회사의 매칭률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함⁸⁶⁾
- 연금수령은 59.5세 이후 가능하며, 59.5세 이전 인출 시 10%의 추가세금이 부과됨

3)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이하 'IRA')는 1974년 ERISA에 의해 시행되었음
- 도입 초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적격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1981년 개정으로 가입 범위가 70세 이하 소득이 있는 전

85) IRS, "One-Participant 401(k) Plans,"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one-participant-401k-plans>, 검색일자: 2023. 1. 31.

86) 정원석·김세중(2018), p. 9

근로자로 확대되었음⁸⁷⁾

- Traditional IRA와 Roth IRA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됨
- Traditional IRA는 다른 퇴직연금의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음⁸⁸⁾
 -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기여금 공제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종전에는 70.5세 이상인 자는 Traditional IRA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었으나, 2019년 12월 31일 이후 연령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음
 -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뮤추얼펀드 또는 생명보험회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종류의 IRA를 개설할 수 있음
 - 401(k)와 마찬가지로 조기 인출 시 10%의 추가세금이 부과됨
- Roth IRA는 연령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는 개인연금 계좌이나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음⁸⁹⁾
 -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있고 수정 AGI(Modified AGI)⁹⁰⁾가 다음보다 적은 경우 Roth IRA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음
 - 부부합산신고 또는 유자격 미망인의 경우 USD 208,000
 - 독신, 세대주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부부별도신고의 경우 USD 140,000
 -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부별도신고의 경우 USD 10,000

87) 류건식·강동호·김동겸(2022), p. 381

88) IRS(2022), pp. 6~36

89) IRS(2022), pp. 37~44

90) 총소득에서 비용 성격의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이하 'AGI')이고, 조정총소득에서 과세 면제된 소득(exempt or excluded)과 특정 공제를 가산한 금액이 '수정 AGI'임. 수정 AGI는 Roth IRA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준금액으로 사용됨. 수정 AGI는 AGI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액, 과세 면제된 재외국인 소득, 과세 제외된 저축채권이자, 수동적 소득 또는 손실, 수업료 공제, IRA 기여금 및 과세대상 사회보장수당에 대해 받은 모든 공제액 등을 가산하여 산출함

-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이고 59.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

〈표 IV-1〉 Traditional IRA와 Roth IRA 특징 비교

구분	Traditional IRA	Roth IRA
납입 연령 제한	없음 (2019년 이전 과세연도는 70.5세 미만인 자로 제한)	없음
납입금 한도	USD 6,500 (2023년에 50세 이상이라면 USD 7,500) ¹⁾	USD 6,500 (2023년에 50세 이상이라면 USD 7,500)이나, 소득에 따라 감소 ¹⁾
납입금 소득공제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

주: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대상인 경우, 소득에 따라 공제한도 감소하며, 독신·세대주인 경우 수정 AGI USD 66,000 이하, 부부합산인 경우 USD 105,000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가능함

자료: IRS(2022), p. 5; IRS, “Traditional and Roth IRAs,”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traditional-and-roth-iras>, 검색일자: 2023. 2. 23.

다. 사적연금 과세제도

1) 납입금에 대한 과세

가) 401(k)

- 401(k)⁹¹⁾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근로자 급여의 일부를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것을 선택하는 연금제도임⁹²⁾

91) 미국 내국세입법(IRC)의 조문 이름을 따서 ‘401(k)’라 함

92) Investopedia, “What Is a 401(k) and How Does It Work?,” <https://www.investopedia.com/terms/1/401kplan.asp>, 2023. 1. 6.; IRS, “401(k) Plan Overview,”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sponsor/401k-plan-overview>, 검색일자: 2023. 1. 30.

- 401(k)에 가입한 근로자는 선택에 의해 급여의 일정 비율을 퇴직저축 계좌로 직접 지급받고 고용주는 해당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로 납입함⁹³⁾
 -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고용주가 연금계좌로 납부한 부분은 근로자의 총소득에는 포함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므로, 이를 ‘선택적 이연’이라 함
 - 선택적 이연은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총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
 - 고용주가 추가로 납입하는 부분을 ‘매칭기여금(matching contribution)’이라 함
 - 401(k)에는 401(k)와 Roth 401(k)의 두 가지 유형이 있지만 모든 고용주가 Roth 계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
 - Roth 401(k)는 Traditional 401(k)와 Roth IRA의 특성을 결합하여 2006년 도입한 확정기여형 제도임
 - 401(k)와 Roth 401(k)는 다음과 같은 과세상의 차이가 있음⁹⁴⁾
 - 401(k)의 경우, 직원 기여금은 총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세전소득으로 기여금이 납입되고, 기여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여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짐
 - Roth 401(k)의 경우, 근로자의 기여금은 총소득에 포함되어 인출 시점에 소득세가 과세된 세후소득으로 납입되고(소득공제 없음), 인출 시 기여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근로자와 고용주는 내국세입법에서 정한 금액한도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추가기여금(catch-up contribution) 한도를 적용함⁹⁵⁾

93) Investopedia, “What Is a 401(k) and How Does It Work?,” <https://www.investopedia.com/terms/1/401kplan.asp>, 2023. 1. 6.

94) Roth가 제공되는 경우 근로자는 401(k)와 Roth 401(k)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까지 모두 납입이 가능함

95) 기여금 한도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됨
Investopedia, “What Is a 401(k) and How Does It Work?,” <https://www.investopedia.com/terms/1/401kplan.asp>, 2023. 1. 6.

- 근로자의 기여금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근로자 기여금의 연간 한도는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간 USD 20,500이고, 50세 이상 근로자는 USD 6,500의 추가 납입이 가능함
 - 2023년 근로자 기여금의 연간 한도는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간 USD 22,500이고, 50세 이상 근로자는 USD 7,500의 추가 납입이 가능함
- 고용주가 기여금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소득공제가 없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의 총기여금 한도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50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자와 고용주 기여금 총액 한도는 USD 61,000 이고, 50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추가기여금을 포함한 한도액은 USD 67,500임
 - 2023년 50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자와 고용주 기여금 총액 한도는 USD 66,000 이고, 50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추가기여금을 포함한 한도액은 USD 73,500임
- 근로자 기여금에 매칭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매칭기여금은 다양한 공식을 사용하여 산정함
- 고용주가 401(k)와 Roth 401(k) 두 가지 유형의 연금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 두 가지 연금에 납입한 총액이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표 IV-2〉 401(k) 납입금 과세이연 한도

(단위: USD)

연도	근로자 납입금		근로자+고용주 납입금	
	50세 미만	20,500	50세 미만	61,500
2022년	50세 이상 추가납입금	6,500	50세 이상 추가납입금 포함	67,500
	50세 미만	22,500	50세 미만	66,000
2023년	50세 이상 추가납입금	7,500	50세 이상 추가납입금 포함	73,500

자료: Investopedia, "What Is a 401(k) and How Does It Work?," <https://www.investopedia.com/terms/1/401kplan.asp>, 2023. 1. 6.

-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된 Secure 2.0 Act에서는 노령층 및 청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음⁹⁶⁾
 - 2025년 1월 1일부터 60세에서 63세 사이의 개인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에 연간 최대 USD 10,000까지 추가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조정 하였음
 - 2024년부터 고용주는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기여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이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401(k)는 1978년 ‘Revenue Act of 1978’에 의해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다음의 주요 개정을 통해 한도금액이 조정되었음⁹⁷⁾
 - 1981년 11월 국세청은 401(k)에 의해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소득 유형에 대하여 정규 근로소득이 적격한 소득이며 이익의 분배소득은 적격한 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음
 - 1982년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1982’에 의해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기여금을 USD 45,475에서 USD 30,000으로 축소하였음
 - 2001년에는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의해 기여금 한도를 USD 35,000으로 인상하였고, 50세 이상의 납세자를 위한 추가 기여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세청은 매년 적격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중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기여금 한도액을 발표함
 - 과세이연 기여금 한도액은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하고 있음

96) Fidelity, “SECURE 2.0: Rethinking retirement savings,” <https://www.fidelity.com/learning-center/personal-finance/secure-act-2>, 검색일자: 2023. 2. 1.

97) DQYDJ, “Historical 401(k) Contribution Limit,” <https://dqydj.com/historical-401k-contribution-limit/>, 검색일자: 2023. 3. 21.

〈표 IV-3〉 401(k) 기여금 한도 연혁

(단위: USD)

연도	근로자 기여금 한도	기여금 총 한도 ¹⁾	50세 이상 추가기여금 한도	연도	근로자 기여금 한도	기여금 총 한도	50세 이상 추가 기여금 한도
1978~1981	45,475	45,475	-	2005	14,000	42,000	4,000
1982~1985	30,000	30,000	-	2006	15,000	44,000	5,000
1986~1987	7,000	30,000	-	2007	15,500	45,000	5,000
1988	7,313	30,000	-	2008	15,500	46,000	5,000
1989	7,627	30,000	-	2009	16,500	49,000	5,500
1990	7,979	30,000	-	2010~ 2011	16,500	49,000	5,500
1991	8,475	30,000	-	2012	17,000	50,000	5,500
1992	8,728	30,000	-	2013	17,500	51,000	5,500
1993	8,994	30,000	-	2014	17,500	52,000	5,500
1994~1995	9,240	30,000	-	2015~ 2016	18,000	53,000	6,000
1996~1997	9,500	30,000	-	2017	18,000	54,000	6,000
1998~1999	10,000	30,000	-	2018	18,500	55,000	6,000
2000	10,500	30,000	-	2019	19,000	56,000	6,000
2001	10,500	35,000	-	2020	19,500	57,000	6,500
2002	11,000	40,000	1,000	2021	19,500	58,000	6,500
2003	12,000	40,000	2,000	2022	20,500	61,000	6,500
2004	13,000	41,000	3,000	2023	22,500	66,000	7,500

주: 기여금 총 한도란 근로자와 고용주의 기여금을 합한 한도를 의미함
 자료: DQYDJ, "Historical 401(k) Contribution Limit," <https://dqydj.com/historical-401k-contribution-limit/>, 검색일자: 2023. 3. 21.

나) Traditional IRA⁹⁸⁾

□ Traditional IRA에 대한 기여금은 납입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직장 퇴직연금 가입자는 소득공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98) IRS(2022), pp. 6~36

- 일반적으로 2023년에 Traditional IRA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USD 6,500 (50세 이상인 경우 USD 7,500)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보상 중 적은 금액임⁹⁹⁾
 - IRA 목적상 과세대상 보상에 포함되는 것은 급여(wages, salaries 등), 커미션, 자영업 소득, 과세대상 위자료, 과세대상이 아닌 장학금 등이며,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금소득 등은 보상에서 제외됨
 - 하나 이상의 IRA 계좌가 있는 경우, 한도 금액은 모든 Traditional IRA 계좌에 대한 총기여금에 적용됨
 - Traditional IRA에 대한 적립금 한도를 초과하였고 다음 과세연도에 한도에 미달한 경우, 그 초과분은 다음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음
- IRA 제도는 1974년 ERISA에 의해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납입한도는 USD 1,500 이었으나 다음의 주요 개정을 통해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음¹⁰⁰⁾
 - 1981년 ‘Economic Recovery Tax Act’를 통해 기여금 한도를 USD 2,000으로 인상하였음
 - 1997년 ‘Taxpayer Relief Act’에 의해 인출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여금 납부 시 세금을 부담하는 Roth형 IRA가 도입되었음
 - 2021년 통과된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2002년부터 기여금 한도를 USD 3,000으로 인상하였고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USD 500의 추가기여금을 도입하였으며, 기여금 한도를 물가상승에 연동 하도록 하였음
 - 2005년 ‘Tax Increase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Act of 2005’에서는 전통적 IRA에서 Roth IRA로의 롤오버에 대한 소득 제한을 폐지하였음
 - 매년 국세청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IRA 기여금 한도를 설정함
 - 일반 개인의 기여금 한도와 50세 이상인 자의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비근로 배우자도 개인과 동일한 한도까지 기여할 수 있음

99) 2019~2022년 기간의 기여금 한도는 USD 6,000(50세 이상 7,000)이었음

100) DQYDJ, “Historical IRA Contribution Limit,” <https://dqydj.com/historical-ira-contribution-limit/>, 검색일자: 2023. 3. 20.

〈표 IV-4〉 IRA 기여금 한도 연혁

(단위: USD)

연도	기여금 한도	50세 이상 추가기여금 한도	비근로배우자 기여금 한도
1974~1976	1,500	-	-
1977~1981	1,500	-	250
1982~1997	2,000	-	250
1998~2001	2,000	-	2,000
2002~2004	3,000	500	3,000
2005	4,000	500	4,000
2006~2007	4,000	1,000	4,000
2008~2012	5,000	1,000	5,000
2013~2018	5,500	1,000	5,500
2019~2022	6,000	1,000	6,000
2023	6,500	1,000	6,500

자료: DQYDJ, "Historical IRA Contribution Limit," <https://dqydj.com/historical-ira-contribution-limit/>, 검색일자: 2023. 3. 20.

- 일반적으로 기여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Traditional IRA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장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 공제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즉,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장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소득 및 신고유형에 따라 부분적 공제를 받거나 전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음

〈표 IV-5〉 직장 퇴직연금 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기여금 공제

(단위: USD)

직장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직장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경우		
신고유형	수정 AGI	소득공제 범위	신고유형	수정 AGI	소득공제 범위
독신, 세대주	66,000 이하	전액 공제	독신, 세대주, 적격미망인, 부부합산, 퇴직연금 대상이 아닌 배우자와 부부별도	제한 없음	전액 공제
	66,000 초과 76,000 미만	부분 공제			
	76,000 이상	공제 불가			
부부 합산, 적격 미망인	105,000 이하	전액 공제	퇴직연금 대상인 배우자와 부부합산	198,000 이하	전액 공제
	105,000 초과 125,000 미만	부분 공제		198,000 초과 208,000 미만	부분 공제
	125,000 이상	공제 불가		208,000 이상	공제 불가
부부 별도	10,000 미만	부분 공제	퇴직연금 대상인 배우자와 부부별도	10,000 미만	부분 공제
	10,000 이상	공제 불가		10,000 이상	공제 불가

자료: IRS(2022), p. 13

- 일반적으로 하나의 퇴직연금계좌에서 분배받은 금액을 60일 이내에 다른 퇴직연금으로 기여(납입)한 현금 및 기타자산은 비과세 분배에 해당하며, 이를 ‘롤오버 기여금(rollover contribution)’이라 함
- Traditional IRA, 고용주가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한 적격 퇴직연금 등에서 Traditional IRA로 이전할 수 있음
 - 동일한 계좌(IRA계좌에서 IRA계좌) 또는 다른 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IRA계좌) 간에 60일 이내에 이전하는 것은 면세로 인출하여 재투자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은 아님

다) Roth IRA¹⁰¹⁾

- Roth IRA에 납입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101) IRS(2022), pp. 37~44

- Traditional IRA와 달리 기여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요건을 충족하여 인출하는 적격 분배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됨
- Roth IRA만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여금 한도는 Traditional IRA와 동일하게 USD 6,500(50세 이상은 USD 7,500) 또는 과세대상 보상 중 적은 금액임¹⁰²⁾
 - 그러나 수정 AGI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여금 한도는 감소할 수 있음
- Roth IRA의 기여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의 세금(excise tax)이 부과됨
 - Roth IRA에 적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에 허용되는 한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음

〈표 IV-6〉 소득에 따른 Roth IRA 기여금 한도(2023년)

(단위: USD)

신고유형	수정 AGI	기여금 한도
부부합산, 적격 미망인	218,000 미만	6,500(50세 이상 7,500)
	218,000 이상 228,000 미만	기여 한도 감소
	228,000 이상	기여 불가
부부별도	10,000 미만	기여 한도 감소
	10,000 이상	기여 불가
독신, 세대주, 부부별도	138,000 미만	6,500(50세 이상 7,500)
	138,000 이상, 153,000 미만	기여 한도 감소
	153,000 이상	기여 불가

자료: IRS, "Amount of Roth IRA Contributions That You Can Make For 2023,"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amount-of-roth-ira-contributions-that-you-can-make-for-2023>, 검색일자: 2023. 2. 23.

- 롤오버 규정에 따라 Traditional, SEP, SIMPLE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거나 적격퇴직연금에서 Roth IRA로 금액을 이전할 수 있음

102) 기여금 한도는 Roth IRA에만 적용하는지 Traditional IRA와 Roth IRA 모두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과세대상 보상은 Traditional IRA와 동일함

라) Saver's Credit¹⁰³⁾

-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하여 납입단계의 소득공제와 더불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Saver's Credit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¹⁰⁴⁾
 -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또는 IRA에 적격기여금을 납부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
 - 18세 이상
 - 다른 사람의 세금신고서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정규 학생¹⁰⁵⁾이 아닐 것
 - 환급불가능 세액공제임

- 세액공제액은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된 조정총소득(AGI)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여금의 50%, 20% 또는 1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함¹⁰⁶⁾
 - Traditional IRA 또는 Roth IRA에 기여금, 401(k), 403(b), Governmental 457(b) 또는 SIMPLE 연금제도에 대한 선택적 이연기여금, 적격퇴직연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세후기여금 등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여금은 USD 2,000(부부합산신고의 경우 USD 4,000) 이므로 최대 세액공제액은 USD 1,000(부부합산신고의 경우 USD 2,000)임

103) IRS,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Saver's Credit),"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savers-credit>, 검색일자: 2023. 1. 20., IRS, 2022, pp. 45~50

104) 이상엽·윤성주(2018), p. 74

105) 정규 학생이란 대상 연도 중 5개월(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동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 정규 교직원, 학습 과정 및 정기적으로 등록된 출석 학생이 있는 학교의 전일 학생
- 정규 교직원, 학습 과정 및 정기적으로 등록된 학생 단체가 있는 학교 또는 주·카운티·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일 농장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

106) 롤오버 기여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표 IV-7〉 신고유형 및 소득별 Saver’s Credit 적용률(2023년)

(단위: USD)

신고유형별 조정총소득 기준			적용률
부부합산신고	세대주	그 외 신고유형	
43,500 이하	32,625 이하	21,750 이하	기여금의 50%
43,501~47,500	32,626 ~ 35,625	21,751 ~ 23,750	기여금의 20%
47,501 ~ 73,000	35,626 ~ 54,750	23,751 ~ 36,500	기여금의 10%
73,000 초과	54,750 초과	36,500 초과	기여금의 0%

주: AGI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됨
 자료: IRS,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Saver’s Credit),”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savers-credit>, 검색일자: 2023. 1. 20.

- Saver’s Credit은 2001년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음¹⁰⁷⁾
 - 미국은 Saver’s credit이 도입되기 전까지 연금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해당 계좌에서 분배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세제혜택의 크기는 납세자의 한계 세율에 따라 달라짐
 - 즉,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가구에 비해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가구의 세제혜택 크기가 더 커지게 됨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함
 - 조세지원이 노후에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더 많은 저축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만을 제공하고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의 필요성이 적은 고소득 가구에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고소득 가구는 자신의 자산을 과세대상에서 연금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로 이동함으로써 연금계좌가 연금저축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정부의 세수 손실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함

107) Gale et al.(2004. 3. 3.), pp. 597~612. Saver’s Credit은 401(k)를 비롯한 기타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및 IRA에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중·하위 소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조세혜택이나 환급불가능 세액공제이므로 다수의 가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에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는 조세혜택 환경을 조정하고 중·하위 소득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Saver's credit을 도입하였음

2)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지 않는 한 은퇴 후 인출할 때까지 발생한 투자수익,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¹⁰⁸⁾

3)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 일반적으로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소득(pension and annuity)은 총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가 과세됨¹⁰⁹⁾
 - 정기적 급여 및 비정기적 급여에 따른 과세상 차이는 없음
 - 지정된 Roth 계정은 납입 시 세제혜택이 없고 적격분배금(qualified distribution)을 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적격분배금이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59.5세에 도달한 이후¹¹⁰⁾에 수령한 것을 의미함

108) Investopedia, "What Is a 401(k) and How Does It Work?," <https://www.investopedia.com/terms/1/401kplan.asp>, 2023. 1. 30.

109) IRS(2021), p. 4, Pension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하고, Annuity는 은퇴설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임. Annuity는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110) 가입자의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수령도 포함함

〈표 IV-8〉 미국의 신고유형별 개인소득세율(2023년)

(단위: USD, %)

과세표준				세율
독신	세대주	부부합산-적격미망인	부부별산	
0~11,000	0~15,700	0~22,000	0~11,000	10
11,001~44,725	15,701~59,850	22,001~89,450	11,001~44,725	12
44,726~95,375	59,851~95,350	89,451~190,750	44,726~95,375	22
95,376~182,100	95,351~182,100	190,751~364,200	95,376~182,100	24
182,101~231,250	182,101~231,250	364,201~462,500	182,101~231,250	32
231,251~578,125	231,251~578,100	462,501~693,750	231,251~346,875	35
578,126 이상	578,101 이상	693,751 이상	346,876 이상	37

자료: Tax Foundation, "2023 Tax Brackets," <https://taxfoundation.org/2023-tax-brackets/>, 검색일자: 2023. 2. 2.

- 연금 수령액에서 원금회수 부분을 차감한 부분이 과세대상 연금소득임¹¹¹⁾
 - 일반적으로 원금이란 연금개시일의 순투자액을 의미하며, 순투자액에는 기여금 납부 시점에 과세되었던 기여금이 포함됨
 - 기여금 납부 시점에 과세가 이연된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됨

- 적절한 퇴직연금제도에서 현금 및 기타 자산으로 인출한 급여를 60일 이내에 다른 적격퇴직연금제도, Traditional IRA, 고용주가 제공하는 SIMPLE IRA로서 가입 후 2년이 지난 계좌로 이전(rollover)하는 경우,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이전된 연금계좌에서 분배받는 시점으로 이연됨¹¹²⁾
 - 적절한 퇴직연금제도는 적절한 근로자 연금제도(employee plan, employee annuity), 403(b) plan,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적절한 과세이연 보상 제도임

111) IRS(2021), p. 10

112) IRS(2021), p. 28

- 적절한 롤오버 분배는 적절한 은퇴연금제도에서 인출하는 모든 분배금이며, 다음은 적절한 롤오버 분배에서 제외함
 - 기대수명(life expectancy) 및 10년의 기간에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분배, 의무분배규정에 의한 최소의무분배(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초과기여금 및 초과 과세이연금의 분배 등
- 적격퇴직연금제도 및 비적격 연금계좌로부터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10%의 추가세금(additional tax)이 부과됨
 - 조기 인출된 분배금은 총소득에 포함되며, 인출금의 형식이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관계없이 적용됨
 - 단, 원금의 회수(적립 시 과세된 기여금의 인출) 및 롤오버 금액과 같이 비과세 분배금에는 적용하지 않음
- 특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최소의무분배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을 인출할 의무가 있음¹¹³⁾
 - 즉, 은퇴하지 않았더라도 72세가 된 다음 해의 4월 1일까지 분배금 수령을 청구하여야 함
 - 2020년 이전에는 최소인출의무 연령이 70.5세였음
 - 최소금액 이하로 인출하는 경우 최소금액과 인출액의 차액에 대하여 50%의 세금(excise tax)이 부과됨¹¹⁴⁾
 -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된 Secure 2.0 Act에서는 은퇴계좌 소유자가 최소의무 분배(RMD)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을 72세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73세로 조정하였음¹¹⁵⁾

113) IRS, “401(k) Resource Guide - Plan Participants - General Distribution Rules,”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401k-resource-guide-plan-participants-general-distribution-rules>, 검색일자: 2023. 1. 30.

114) IRS(2022), p. 7

115) Fidelity, “SECURE 2.0: Rethinking retirement savings,” <https://www.fidelity.com/learning-center/personal-finance/secure-act-2>, 검색일자: 2023. 2. 1.

- 2023년부터 최소의무분배 미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을 현재 50%에서 의무분배 미수령 금액의 25%로 인하하였음
-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Roth 계정은 2024년부터 의무분배규정이 면제됨

2. 독일

가. 연금제도 체계

-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0층에 해당하는 기초소득보장제도(Grundsicherung im Alter) 외 공적연금(제1층), 기업연금(제2층) 그리고 개인연금(제3층)의 3층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¹¹⁶⁾
 - 독일은 2000년대 초반 공적연금의 보완을 위해 기업연금과 개인연금(후술할 리스터연금, 뤼름연금)을 도입하여 국가의 보조를 통한 촉진책을 마련함¹¹⁷⁾
 -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은 모두 임의가입에 의한 적립방식으로 국고보조 또는 세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제1층의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의무가입이며 직군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됨¹¹⁸⁾
 - 법정연금(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GRV): 일반 고용 노동자들과 독립 예술가, 수공업자, 언론인, 프리랜서 교사 등 일부 자영업자들이 가입함

116) 김동겸(2021), p. 25; 우승명(2019), p. 94; 주독일대사관 경제과(2018), p. 1

117) 유호선·김진수·Christina Hiessl(2017), p. 15

118)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22b), p. 7; 우승명(2019), p. 94; 정원석·강성호·마지혜(2017), pp. 2~3

- 법정연금은 노령, 질병, 사고 및 장애 등으로 근로활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지향함¹¹⁹⁾
 - 공무원연금(Beamtenversorgung): 공무원·법관·직업군인을 위한 연금제도임
 - 전문직연금(Versorgungswerke der Freiberufler): 의사·약사·건축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립식으로 운영됨
 - 농민연금((Altersversorgung der Landwirte)
- 제2층의 기업연금(Betriebliche Altersversorgung)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대응하는 사적연금으로 주로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임의가입체제를 가짐¹²⁰⁾
- 2001년 개혁을 통하여 근로자가 급여희생방식으로 기업연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대기업에 이를 제공할 의무를 줌
 - 광부연금(Knappschaft)은 기업연금적 성격을 지니지만, 법정사회보험으로서 공적 연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음¹²¹⁾
- 제3층의 개인연금(Alterssicherung aus privater Vorsorge)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제도임
- 개인연금제도로는 리스터연금(Riester Rente), 뤼름연금(Rürup Rente)이 대표적이고, 그 외 생명보험 등도 포함됨

119) 주독일대사관 경제과(2018), p. 1

120) 유호선·김진수·Christina Hiessl(2017), p. 81

121) BPB(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https://www.bpb.de/themen/soziale-lage/rentenpolitik/500554/knappschaftliche-rentenversicherung/>, 검색일자: 2023. 2. 8.

[그림 IV-2] 독일의 연금체계

개인연금 (제3층)	리스터연금, 뤼롭연금 등				
기업연금 (제2층)	기업연금	광부 연금	공무원 연금	전문직 연금	농민 연금
법정연금 (제1층)	법정연금(GRV)				
직군	생산직·사무직 노동자(근로자), 예술가, 수공업자 등	광부	공무원, 법관, 군인	전문직 자영업자	농민

주: 독일은 제0층에 해당하는 기초소득보장제도를 두고 있으나 연금체계 설명 시 생략하기로 함
 자료: 김동겸(2021), p. 25; 유호선·김진수·Christina Hiessl(2017), p. 2; 김영미(2014), p. 413 참고
 하여 저자 재구성

- 2001년 이전까지는 독일의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대부분을 감당하였으나 독일정부는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리스터연금과 뤼롭연금을 도입함으로써 3층 개인연금을 강화함¹²²⁾
- 2000년대 초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면서 독일정부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 기조가 개인연금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됨¹²³⁾
 -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인해 연금보험료가 인상되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므로, 이러한 임금비용의 추가 증가 없이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122) 정원석·강성호·마지혜(2017), pp. 20~21

123) IBFD, “AG opinion, C-269/07 Commission v. Germany, Mazák, 31 March 2009,”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ecjd/html/ecjd_c_269_07-agfulltext.html, 검색 일자: 2023. 1. 9.

- 따라서 독일정부가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의 도입을 추진한 결과, 2001년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리스터연금, 2005년에는 자영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뤼뵘연금을 도입함

나. 사적연금제도

가) 기업연금

- 독일의 기업연금(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bAV; Betriebsrente)은 「기업연금법(Betriebsrentengesetzes, BetrAVG)」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기업연금법(BetrAVG)」§1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을 기반으로 사용자로부터 기업연금제도의 일부로 노령,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약속받을 수 있음
- 기업연금은 사용자 또는 연금 제공자(법적 책임이 있는 연금 기관)가 운영할 수 있고,¹²⁴⁾ 이에 따라 5가지 상품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DB형 방식을 취함¹²⁵⁾, ¹²⁶⁾
 - 사내 적립: 직접보장(Direktzusage), 지원금고(Unterstützungskasse)
 - 직접보장은 사용자가 외부 공급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에게 연금 지급 혜택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이용되는 방법임¹²⁷⁾
 - 지원금고(또는 공제기금이라고도 함)는 기업이 사단법인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공제금고를 설립하여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외부적립제도로 우리나라의 퇴직금 사외적립과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음¹²⁸⁾

124) BetrAVG § 1b (2)~(4)

125)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Experten/Arbeitgeber-und-Steuerberater/summa-summarum/Lexikon/B/betriebliche_altersversorgung.html, 검색일자: 2023. 1. 12.;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22), pp. 432~435; 홍범교·박수진·정경화(2013), pp. 71~74

126) Deutscher Bundestag(2022a), p. 4

127) Betriebliche Altersvorsorge24, “DIREKTZUSAGE BAV,” <https://www.betriebliche-altersvorsorge24.info/direktzusage/direktzusage-bav>, 검색일자: 2023. 1. 13.;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22), pp. 432~433

- 사외 적립: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 연금금고(Pensionskasse), 연금펀드(Pensionsfonds)¹²⁹⁾
 - 직접보험은 사용자가 연금급여 지급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이 수급권을 가지는 형태로 과거 우리나라의 퇴직적립보험과 유사한 형태임
 - 연금금고는 주로 대기업이 독립법인으로 연금금고(주로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외부적립제도로, ‘연금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직접 보장 다음으로 많이 활용됨
 - 연금펀드는 단독 또는 복수기업이 연금펀드를 설립하고 여기에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외부적립제도로, 다른 방식과 달리 DB형, DC형 모두 가능하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함

- 근로자는 이연보상(Entgeltumwandlung) 방식을 통하여 사회보장기여금 한도액(Beitragsbemessungsgrenze in der allgemeinen Rentenversicherung)¹³⁰⁾의 최대 4%를 급여에서 공제 후 기업연금에 납입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¹³¹⁾
- 독일 기업연금은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체제이기에 납입 방법이 위 방식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2002년 근로자가 이연보상 방식의 납입 요구 시 사용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도입됨¹³²⁾

128) Deutsche Rentenversicherung, “Direktzusage/Unterstützungskasse,”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Experten/Arbeitgeber-und-Steuerberater/summa-summarum/Lexikon/D/direktzusage_unterstuetzungskasse.html, 검색일자: 2023. 1. 15.; 류건식·강성호·김동경(2022), p. 433

129) 류건식·강성호·김동경(2022), pp. 434~435; Deutscher Bundestag(2022b), pp. 4~5

130) 사회보장기여금은 법정 건강 및 연금보험 기여금을 의미하며, 사회보장기여금 한도액이란 독일 정부가 사회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득수준의 증가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는 매개변수임(Die Bundesregierung, “Neue Beitragsbemessungsgrenzen für 202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beitragsbemessungsgrenzen-2023-2133570>, 검색일자: 2023. 2. 20.)

131) BetrAVG § 1. 2. 1a. (1); Deutsche Rentenversicherung, “Entgeltumwandlung für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Experten/Arbeitgeber-und-Steuerberater/summa-summarum/Lexikon/E/entgeltumwandlung_fuer_betriebliche_altersversorgung.html, 검색일자: 2023. 1. 15.

- 이연보상은 급여전환(Gehaltsumwandlung) 또는 임금전환(Lohnumwandlung)이라고도 하며, 근로자가 현재 급여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어 기업연금에 납입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것임¹³³⁾
- 2018년부터 시행된 단체교섭 협약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환된 급여의 15%를 직접보험, 연금기금, 연금금고에 사용자 기여금으로 불입해야 함¹³⁴⁾
- 독일의 기업연금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최소 60세(2012년 이후 체결한 계약의 경우 62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지급이 가능함¹³⁵⁾
- 기업연금 지급·수령 방식은 다음 형태 중 선택 가능함
 - 종신연금: 매달 특정 금액의 연금급여 형태로 수령함
 - 일시금: 적립된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함
 - 변동급여: 적립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약 30%)만 일시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적립액은 종신연금으로 수령함

나) 리스터연금

- 독일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분을 사적연금을 통해 보전하고자, 2001년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함¹³⁶⁾
- 리스터연금은 저소득·다자녀가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함

132) 유효선·김진수·Christina Hiessl(2017), p. 81

133) Transparent Beraten, "1. Wie funktioniert die Entgeltumwandlung? - Teil des Bruttogehalts fließt in die bAV," <https://www.transparent-beraten.de/betriebliche-altersvorsorge/entgeltumwandlung/>, 검색일자: 2023. 1. 12.

134) BetrAVG § 1a. (1a); OECD(2022a), p. 50

135) Transparent Beraten, "So funktioniert die Auszahlung der betrieblichen Altersvorsorge," <https://www.transparent-beraten.de/betriebliche-altersvorsorge/auszahlung/#Steuern-bei-Auszahlung>, 검색일자: 2023. 1. 13.

136) 류건식·강성호(2020), p. 7

- 정부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본인 기여금을 낮게 납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됨¹³⁷⁾
- 리스터연금제도에서 정부는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은 연방금융감독원에서 인증을 받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자들만 신청할 수 있음¹³⁸⁾
-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의 급여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공적연금 당연가입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적용대상임¹³⁹⁾
- 정부 인증형 개인연금으로 가입대상이 원칙적으로 법정연금의 의무가입자이지만,¹⁴⁰⁾ 그중에서도 특히 저소득 임금 근로자를 주 가입대상으로 함¹⁴¹⁾
 - 수공업자 및 예술가 등 법정연금의 당연가입대상자로 가입 중인 일부 영세자영업자, 공적연금에 가입한 농민 등 공적연금 당연가입대상자도 가입 가능함
 - 그러나 법정연금의 의무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전문직연금 가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 한편 법정연금의 의무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리스터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이 리스터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인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함¹⁴²⁾
- 가입자의 리스터연금 기여금은 연간(직전 연도 기준) 총소득의 4%로 함¹⁴³⁾
 - 기여금 비율은 2002년 기준 1%였다가 격년으로 상승하여(Riester-Treppe) 2008년 4%가 된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¹⁴⁴⁾

137) 이상엽·윤성주(2019), p. 12

138) 김영미(2014), p. 422; 홍범교·박수진·정경화(2013), p. 74

139) IOPS(2019), p. 1; 홍범교·박수진·정경화(2013), p. 74

140) EStG § 10a. 1

141) 김동겸·류건식(2017), p. 26; 김영미(2014), p. 415, p. 421

142) 다만 독립적인 리스터연금 계약이 아닌 부속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여금 납입의무는 법정연금 의무가입자인 배우자가 부담함

143) EStG §86; §10a 1.1; OECD(2022a), p. 50; 유호선·김진수·Christina Hiessl(2017), p. 100

- 즉 가입자는 전년도 총소득의 4%에 해당하는 기여금에서 수령한 보조금을 뺀 만큼을 본인부담금으로 납입함
 -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전액(총소득의 4%) 불입해야 하며, 일부만 납입하는 경우 보조금도 이에 비례하여 감소함
 -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 보조금만으로 이미 4%를 충족하거나 초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조금 청구권자가 기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EUR 60의 기여금은 납부하도록 함
 - 보조금 수급 적격자의 배우자 및 동성파트너도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들 자신의 리스터연금에 연간 최소 EUR 60을 납부해야 함
- 리스터연금의 보조금은 연 소득의 4%에 상응하는 연금기여금에 대응하여 정부가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크게 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으로 구성되며 그 금액은 도입 이후 조금씩 증가하였고, 2008년부터는 경력 스타터 보너스도 추가됨^{145), 146)}
- 기본보조금은 EUR 175(부부의 경우 EUR 350)임
 - 기본보조금은 2002~2003년 EUR 38, 2004~2005년 EUR 76, 2006~2007년 EUR 114, 2008~2017년 EUR 154, 2018년 이후 EUR 175로 증가됨¹⁴⁷⁾
 - 자녀보조금은 자녀 1인당 EUR 185(2008년 이후 출생의 경우 EUR 300)임
 - 자녀보조금은 2002~2003년 EUR 46, 2004~2005년 EUR 92, 2006~2007년 EUR 138에서 2008년부터 EUR 185(2008년 이후 출생의 경우 300)로 증가

144) 유효선·김진수·Christina Hiessl(2017), p. 99

145) IOPS(2019), p. 3;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21), p. 474(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28-subventionsbericht.pdf?__blob=publicationFile&v=6, 검색일자: 2023. 1. 9.); 유효선·김진수·Christina Hiessl(2017), p. 99

146) Börsch-Supan et al.(2016), p. 19

147) 2018년에 기본보조금의 크기는 상향되었으나, 자녀보조금, 경력 스타터 보너스, 후술할 기여금 특별비용 공제한도와 같은 주요 값은 일정하게 유지됨(Deutsche Rentenversicherung, "1. Bedingungen der Zulageförderung für das Beitragsjahr 2018," <https://rvaktuell.de/02-2022/foerderung-der-riester-rente-durch-zulagen-und-sonderausgabenabzug-weiterer-rueckgang-bei-den-gefoerderten-personen-im-beitragsjahr-2018-im-vergleich-zum-beitragsjahr-2017/>, 검색일자: 2023. 3. 23.)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25세 미만은 1회에 한하여 EUR 200을 추가지급 가능함(경력 스타터 보너스)
 - 2008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금액은 도입 이후 변동되지 않았음
- 리스터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은 원칙상 60세(2012년 이후 체결한 계약의 경우 62세)이며 그 이전의 인출은 불가능함¹⁴⁸⁾
 - 원칙적으로 종신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지만, 85세부터의 종신연금 수령을 전제로 하여 그전에는 변동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변동급여(income drawdown 또는 programmed withdrawal) 방법도 선택 가능함^{149), 150)}
 - 변동급여는 매달 지속해 이루어져야 하며, 인출금액은 85세까지 일정하거나 증가해야 함
 - (종신)연금수령 단계가 시작되면 적립된 소득의 일부를 8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급여로 수령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함
 - 리스터연금에서 연금급여로 수령하는 금액이 월 EUR 32.90(2022년 기준) 미만인 경우 총 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다) 뮌헨연금

- 뮌헨연금제도는 리스터연금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형평성 차원에서 「노후재산법(Alterseinkünftegesetz, AltEinkG)」에 의해 2005년 도입된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임¹⁵¹⁾
 - 독일의 법정연금은 일부 자영업자(주로 저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자영업자를 의무가입자로 정하지 않음

148) AltZertG(연금인증법) § 1. (1). 2; § 14. (3)

149) OECD(2015), p. 33

150) Berner et al.(2006), p. 510; p. 515

151) 류건식·강성호(2020), p. 7; OECD(2022a), p. 49

- 뤼릅연금은 제도 취지에 맞게 독일의 경제활동 계층으로 법정연금의 의무가입자에서 배제되어 있고, 기업연금이나 리스터연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계층, 즉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¹⁵²⁾
 -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의해 충분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자들은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적연금과는 구별된다고 평가됨
 - 통상적으로 독일의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Solo-Selbständige)를 포함하여 (소)상공인, 자유업종사자(Freiberufler),¹⁵³⁾ 프리랜서(Freie Mitarbeiter),¹⁵⁴⁾ 유사 자영업자 및 외관자영업자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남¹⁵⁵⁾

- 연금상품이 뤼릅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적용대상 요건 및 아래의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함¹⁵⁶⁾
 - 연금 수급은 최소 60세(2012년 이후 체결한 계약의 경우 62세)부터 가능하며 조기 인출은 허용되지 않음
 - 종신연금 형태로만 수급 가능하며, 일시금 인출은 허용되지 않음¹⁵⁷⁾
 - 이는 연금에 한 번 가입하면 중단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뤼릅연금의 한계점으로 여겨짐¹⁵⁸⁾
 -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음

152) 유희선·김진수·Christina Hiessl(2017), p. 26

153) 자유업종사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이 대표적이며, 대체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지만 근로자가 되기도 함(김영미, 2014, p. 409)

154) 프리랜서는 사용자와 '자유로운 협력관계(Freies Mitarbeiterverhältnis)'에 있는 자로서 '자유로운 고용계약(freier Dienstvertrag)'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지만 종속적인 근로관계(Arbeitsverhältnis)를 형성하지는 않으며, 대표적으로 저널리스트, 큐레이터, 음악가, 연주가, 교사 및 강사, 프로그래머 등이 있음(김영미, 2014, pp. 409~410)

155) 김영미(2014), p. 409

156) IOPS(2019), p. 3; 유희선·김진수·Christina Hiessl(2017), pp. 27~28

157) Bundesfinanzministerium, "Basisrente,"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lossareintraege/B/019_Basisrente.html?view=renderHelp, 검색일자: 2023. 1. 9.

158) Rürup-Rente.net, "Die Vor- und Nachteile der Rürup-Rente," <https://www.ruerup-rente.net/vor-und-nachteile/>, 검색일자: 2023. 1. 17.

- 단 가입자의 조기 사망 시 원칙적으로 모든 수급권은 소멸되지만, 높은 추가 기여금을 부담해야 하는 특약을 통해 유족에게 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음¹⁵⁹⁾

다. 사적연금 과세제도

1) 납입금에 대한 과세

- 독일의 사적연금 과세제도는 전반적으로 EET(면세-면세-과세) 방식을 취함¹⁶⁰⁾

가) 기업연금

- 독일의 기업연금은 공통적으로 추후과세원칙(Grundprinzip der nachgelagerten Besteuerung)에 따라 납입한 기여금은 한도 내에서 비과세(소득공제)하고 연금급여에 대하여 과세함¹⁶¹⁾
 - 또한 모든 기업연금에 대한 사용자의 기여금은 근로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음¹⁶²⁾
 - 기업연금은 사용자부담에 의한 임의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 재량의 여지가 많고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제지원도 각각의 운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펀드에 납입한 기여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장 기여금 한도의 8%까지는 비과세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함^{163), 164)}

159) 유족급여로 배우자와 25세 이하의 자녀에게 수급권을 주도록 하는 제한적 조건부 특약도 가능함

160) IOPS(2019), p. 3; 이상엽·윤성주(2018), p. 78

161) Transparent Beraten, "Betriebliche Altersvorsorge - Die Testsieger-Tarife für Arbeitgeber und Arbeitnehmer im Vergleich (2023)," <https://www.transparent-beraten.de/betriebliche-altersvorsorge/>, 검색일자: 2023. 1. 12.; 김영미(2014), p. 419

162) 정원석·강성호·이상우(2014), p. 44

- 2023년 기준 사회보장기여금 한도는 EUR 87,600이며,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 펀드에 납입할 수 있는 비과세 기여금 한도액은 월 EUR 584, 연 EUR 7,008임
- 2017년까지는 사회보장기여금 한도액의 4%까지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18년 「기업연금강화법(Betriebsrenten - starkungsgesetz, BRSG)」의 도입으로 2018년부터 한도율을 인상하여 적용함
 - 2018년 이전에는 2004년 12월 31일 이후 계약된 연금 약정에 대하여 사용자 납입 기여금 중 최대 EUR 1,800을 추가 공제하였으나, 한도율 상승과 함께 동 규정은 폐지됨
- 사용자의 경우 한도 내 기여금을 사업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2018년부터는 아래의 세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됨
 - 사용자가 저소득 근로자(2022년 기준 월 EUR 2,575 이하 소득자)를 대신하여 임금 외에 매년 최소 EUR 240에서 최대 EUR 960을 기업연금에 납입하는 경우, 기여금의 30%를 국가보조금(또는 세금 환급)으로 받을 수 있음^{165), 166)}
- 근로자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액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¹⁶⁷⁾
 - 근로자가 이연보상(급여전환) 방식으로 납입한 기여금은 과세대상 급여에서 공제함
 - 2005년 이전 가입자는 총 납입액 중 최대 EUR 1,752까지 20%의 고정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8%의 소득공제 중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음

163) 단 기여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지급을 위한 연금납입에 한함

164) EStG, § 3. 63. 1; § 19. (3); OECD(2022a), p. 47; Deutsche Rentenversicherung, “Finanzi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durch den Arbeitnehmer,”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Experten/Arbeitgeber-und-Steuerberater/summa-summarum/Lexikon/F/finanzierung_der_betrieblichen_altersversorgung_durch_den_arbeitnehmer.html, 검색일자: 2023. 1. 13.; 이상엽·윤성주(2018), p. 78

165) Deutscher Bundestag(2017), p. 68; p. 120; OECD(2022a), p. 50

166) BMAS, “Ford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https://www.bmas.de/DE/Soziales/Rente-und-Altersvorsorge/Zusaetzliche-Altersvorsorge/Betriebliche-Altersversorgung/foerderung-betriebliche-altersvorsorge.html>, 검색일자: 2023. 2. 14.

167) OECD(2022a), p. 47; 강성호·류진식·김동겸(2017), p. 59

- 직접보장에 납입하는 금액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비과세되며 납입한도도 적용되지 않음¹⁶⁸⁾
- 지원금고에 대한 사용자의 기여금은 일정 한도까지 사업경비로 공제 가능하고, 근로자의 납입액은 전액 비과세함¹⁶⁹⁾
 - 사용자의 기여금 공제 한도는 급여의 유형 및 평균적인 수준에 따라 상이함

나) 리스터연금

- 가입자는 불입한 리스터연금 기여금과 수령한 보조금을 특별비용으로 연간 EUR 2,100(또는 EUR 2,16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¹⁷⁰⁾
 -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보조금과의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 소득공제로 감면받는 세금과 보조금과의 차액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음
 -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 시 세금 환급액(소득 공제로 감면받는 세금)이 보조금보다 많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세금 환급액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만큼 세금 환급을 받도록 함¹⁷¹⁾
 - 즉 결과적으로 가입자 입장에서 보조금과 소득공제 중 유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줌
 - 보조금 수급 적격자의 배우자(또는 동성파트너)도 그들 자신의 리스터연금에 연 최소 EUR 60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168) transparent beraten, “Wie die bAV durch das Betriebsrenten - starkungsgesetz (BRSG) attraktiver wird,” <https://www.transparent-beraten.de/betriebliche-altersvorsorge/betrieb-srentenstaerkungsgesetz/>, 검색일자: 2023. 1. 12.; 이상엽·윤성주(2018), p. 78

169) 유희선·김진수·Christina Hiessl(2017), p. 84; 정원석·강성호·이상우(2014), p. 44

170)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28. Subventionsbericht des Bundes 2019 - 2022,” 2021, p. 47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28-subventionsbericht.pdf?_blob=publicationFile&v=6, 검색일자: 2023. 1. 9.; EStG, 2. § 3; OECD(2020a), p. 50

171) 정원석·강성호·마지혜(2017), p. 26; 이는 고소득층의 리스터연금 가입유인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장치로 작용함

원래의 보조금 수급 적격자 기여금 공제한도가 EUR 2,160으로 상향됨¹⁷²⁾

- 기여금(보조금 포함) 공제한도는 2002~2003년 EUR 525, 2004~2005년 EUR 1,050, 2006~2007년 EUR 1,575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EUR 2,100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¹⁷³⁾

〈표 IV-9〉 리스터연금 보조금 및 소득공제 한도 연혁

(단위: %, EUR)

연도	기여율 (보험료율) ¹⁾	최소 기여금 ²⁾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경력 스타터 보너스	소득공제 한도
2002~ 2003	1%	45/38/30 ³⁾	38	46	-	525
2004~ 2005	2%	60	76	92	-	1,050
2006~ 2007	3%	60	114	138	-	1,575
2008~ 2017	4%	60	154	185(300 ⁵⁾)	200 ⁶⁾	2,100
2018~	4%	60	175 ⁴⁾	185(300 ⁵⁾)	200 ⁶⁾	2,100

주: 1)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함

2) 본인 기여금이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다가 최소 EUR 60 이상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됨

3) 각각 무자녀/ 자녀 1명/ 2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임

4) 2018년에 기본보조금의 크기는 상향되었으나, 그 외 자녀보조금, 경력 스타터 보너스, 소득공제 한도 등의 값은 일정하게 유지됨

5)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함

6) 25세 미만 가입자에 대하여 1회만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자료: 유희선·김진수·Christina Hiessl(2017), p. 101, 〈표 IV-3〉; Börsch-Supan et al.(2016), p. 19, 〈Tabelle 3: Übersicht der Riester-Förderung, in Euro〉; Deutsche Rentenversicherung, "1. Bedingungen der Zulageförderung für das Beitragsjahr 2018," <https://rvaktuell.de/02-2022/foerderung-der-riester-rente-durch-zulagen-und-sonderausgabenabzug-weiterer-rueckgang-bei-den-gefoerderten-personen-im-beitragsjahr-2018-im-vergleich-zum-beitragsjahr-2017/>, 검색일자: 2023. 3. 23.

172) OECD(2020a), p. 48

173) Börsch-Supan et al.(2016), p. 19

다) 뤼롭연금

- 개인이 세제적격 뤼롭연금에 납입한 기여금 중 일정 비율(2005년 60%에서 2025년 까지 100%로 매년 2%p씩 상향조정 중임)을 소득공제함¹⁷⁴⁾
- 소득공제 한도는 공적연금인 광부연금제도(Knappschaft)에서 정하는 최대 기여금의 각 연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임
 - 즉 2023년 기준 뤼롭연금 납입액의 96%가 최대 광부연금 한도의 96%(2023년 기준 개인: EUR 26,528, 부부: EUR 53,056)까지 공제되는 것임¹⁷⁵⁾

〈표 IV-10〉 독일 뤼롭연금의 기여금 소득공제 비율

(단위: %)

연도	2005	...	2013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2040
비율	60	...	76	...	90	92	94	96	98	100	-	-

자료: Rürup-Rente.net, “Rürup-Rente: Die private Altersvorsorge mit dem größten Steuervorteil,” <https://www.ruerup-rente.net/ratgeber/steuervorteile/#wachsende-steuervorteile>, 검색일자: 2023. 1. 5.; 김동겸·류건식(2017), p. 27, 〈표 1〉 형식 참고

2)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가) 기업연금

-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제도 역시 기업연금의 유형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음¹⁷⁶⁾
 -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펀드의 운용수익은 비과세함
 - 직접보장, 즉 사내 충당금 적립방식의 운용단계의 수익은 투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임

174) EStG § 10. 2: OECD(2022a), p. 48; 유호선·김진수·Christina Hiessl(2017), p. 119
 175) OECD(2022a), p. 48; Finanzen, “RÜRUP-RENTE - Steuern sparen und vorsorgen,” <https://www.finanzen.de/altersvorsorge/ruerup-rente>, 검색일자: 2023. 3. 21.
 176) 정원석·강성호·이상우(2014), p. 45

- 지원금고의 운용수익은 일정 수익률까지만 비과세하고 과세대상은 수령시점으로 이연하여 과세함

나) 리스터연금과 뮌헨연금

- 리스터연금과 뮌헨연금의 운용수익은 발생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음¹⁷⁷⁾

3)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가) 연금급여 과세

- 기업연금 중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펀드, 개인연금 중 리스터연금, 뮌헨연금에서 연금 급여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¹⁷⁸⁾, ¹⁷⁹⁾
-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소득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에 한함¹⁸⁰⁾
 - 예를 들어 납입 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여금이나 리스터연금 보조금을 받지 못한 납입액은 연령 기반 비율만큼만 과세함
 - 수급자가 60세·65세·67세에 최초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령기반 과세비율은 각각 연간 연금소득의 22%·18%·17%임¹⁸¹⁾
 - 매년 연금급여 중 과세비율은 연금급여 개시연도에 따라 2005년 이전 50%에서 출발하여 2006년부터 매년 2%p씩, 2021년부터는 매년 1%p씩 과세비율을 인상하여 2040년부터는 연금수령액의 100%를 과세하게 됨

177) IOPS(2019), p. 3; 이상엽·윤성주(2018), p. 80

178) EStG § 22;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22a), pp. 28~29; OECD(2022a), p. 49; 이상엽·윤성주(2018), pp. 80~81; Transparent Beraten, "Welche Steuern werden in der Auszahlungsphase fällig?," <https://www.transparent-beraten.de/betriebliche-altersvorsorge/steuern-steuererklaerung/#Diese-Steuern-fallen-bei-Auszahlung-an>, 검색일자: 2023. 1. 12.

179) 2005년 이전에 체결된 기업연금 계약의 경우 저축단계에서 저축금액의 20%를 과세하고 인출 시에는 별도의 고정세율로 과세함

180) EStG § 10. (1); § 3

181) OECD(2020a), p. 49

〈표 IV-11〉 독일 연금 개시연도별 연금급여(기타소득) 중 과세비율

(단위: %)

연도	과세비율	연도	과세비율	연도	과세비율
2005	50	2017	74	2029	89
2006	52	2018	76	2030	90
2007	54	2019	78	2031	91
2008	56	2020	80	2032	92
2009	58	2021	81	2033	93
2010	60	2022	82	2034	94
2011	62	2023	83	2035	95
2012	64	2024	84	2036	96
2013	66	2025	85	2037	97
2014	68	2026	86	2038	98
2015	70	2027	87	2039	99
2016	72	2028	88	2040	100

주: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펀드, 리스터연금, 뮌헨연금에서 연금급여를 받는 경우 적용함
 자료: EStG § 22. 1. a). aa)

- 리스터연금에서 변동급여(programmed withdrawals) 방식으로 85세 이후부터 종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의 한계 소득세율로 과세함¹⁸²⁾
 - 연금 수령액 중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은 오직 연령 기반 비율만큼만 과세함

- 직접보장, 지원금고에서 수령하는 연금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함¹⁸³⁾
 - 2023년 기준 연금 수령액의 13.6%(최대 EUR 1,020)와 EUR 306을 공제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함
 - 연금급여가 개시되는 연도에 따라 연금공제 비율 및 보충공제 금액이 결정되고, 연금공제 비율은 매년 0.8%p씩, 보충 공제금액은 EUR 18씩 인하여 2040년부터는 공제혜택이 없어짐

182) OECD(2022a), p. 49

183) EStG § 19

〈표 IV-12〉 독일 연금 개시연도별 연금급여(근로소득) 중 연금공제 비율 및 보충 공제금액
(단위: %, EUR)

연도	연금공제		보충 공제	연도	연금공제		보충 공제	연도	연금공제		보충 공제
	비율	한도			비율	한도			비율	한도	
2005	40	3,000	900	2017	20.8	1,560	468	2029	8.8	660	198
2006	38.4	2,880	864	2018	19.2	1,440	432	2030	8.0	600	180
2007	36.8	2,760	828	2019	17.6	1,320	396	2031	7.2	540	162
2008	35.2	2,640	792	2020	16.0	1,200	360	2032	6.4	480	144
2009	33.6	2,520	756	2021	15.2	1,140	342	2033	5.6	420	126
2010	32.0	2,400	720	2022	14.4	1,080	324	2034	4.8	360	108
2011	30.4	2,280	684	2023	13.6	1,020	306	2035	4.0	300	90
2012	28.8	2,160	648	2024	12.8	960	288	2036	3.2	240	72
2013	27.2	2,040	612	2025	12.0	900	270	2037	2.4	180	54
2014	25.6	1,920	576	2026	11.2	840	252	2038	1.6	120	36
2015	24.0	1,800	540	2027	10.4	780	234	2039	0.8	60	18
2016	22.4	1,680	504	2028	9.6	720	216	2040	0.0	0	0

주: 직접보장, 지원금고에서 연금급여를 받는 경우 적용함
자료: EStG § 19. (2). 3

나) 일시금 등 과세

- 기업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급여에 적용하는 감면(비과세 또는 공제) 없이 인출금액 전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¹⁸⁴⁾
 - 다만 직접보장과 지원금고에서 인출하는 일시금은 향후 5년간 균등분할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음¹⁸⁵⁾

184) Transparent Beraten, "Welche Steuern werden in der Auszahlungsphase fällig?," <https://www.transparent-beraten.de/betriebliche-altersvorsorge/steuern-steuererklaerung/#Diese-Steuern-fallen-bei-Auszahlung-an>, 검색일자: 2023. 2. 18.; Procontra, "bAV: Wie werden Kapitalauszahlungen versteuert?," <https://www.procontra-online.de/recht/artikel/bav-wie-werden-kapitalauszahlungen-versteuert>, 검색일자: 2023. 2. 18.

185) EStG § 34

-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펀드 또는 리스터연금을 60세(2012년 이후 체결계약은 62세)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보통 총적립액의 최대 30%(2005년 이전 계약은 20%)까지 허용하되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급여를 받아야 함¹⁸⁶⁾,¹⁸⁷⁾
 - 만약 연금을 60세(2012년 이후 체결계약의 경우 62세) 이전에 해지하고 적립금을 찾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혹은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함
 - 다만 일시금은 향후 5년간 균등분할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음

- 리스터연금의 경우 연금급여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이 월 EUR 32.90(2022년 기준) 미만인 경우, 총 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에 포함됨¹⁸⁸⁾

- 워킹연금은 연금 형태로만 수령 가능하고 일시금 인출은 불가능함

3. 영국

가. 연금제도 체계

- 영국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제0층에 해당하는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외 제1층 공적연금과 제2층의 기업연금 및 제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됨
 - 제0층의 연금크레딧은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함

186) 김동겸(2021), p. 25; 이상엽·윤성주(2018), pp. 80~81; OECD(2020a), p. 49

187) Riester-Rente.net, "AUSZAHLUNG DER RIESTER-RENTE - DAS SOLLTEN SIE WISSEN," <https://www.riester-rente.net/foerderung/auszahlung/>, 검색일자: 2023. 1. 15.

188) OECD(2020a), p. 49

- 제1층 공적연금은 기존 기초국가연금(Basic State Pension, BSP)과 소득보전의 제2국가연금(State Second Pension, S2P)이 2016년 4월 6일 통합되면서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 nSP)으로 전환됨¹⁸⁹⁾
 - 출생연도¹⁹⁰⁾에 따라 기초국가연금(BSP)과 신국가연금(nSP) 가입 대상자를 구분함
 - 신국가연금(nSP)은 제도 전환 이후 신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의 기초국가연금(BSP)이나 제2국가연금(S2P)에 대한 수급권은 그대로 인정됨
 - 기초국가연금(BSP)은 16세 이상 연금수급개시연령 전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근로자와 자영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제2국가연금(S2P)은 일정 수준 이상의 16세 이상 근로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음¹⁹¹⁾
 - 신국가연금(nSP)으로의 통합은 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적연금의 빈곤 방지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음
- 영국의 사적연금은 구분에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제2층 기업연금과 제3층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음
 - 제2층의 기업연금은 곧 영국의 직장연금(workplace pension)을 의미하고, 의무 가입을 기반으로 함
 - 제3층의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가입에 기초하여 운영됨¹⁹²⁾
- 제2층 기업연금은 공적부문 기업연금과 사적부문 기업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적부문 기업연금은 공적연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사적부문 기업연금 제도를 위주로 설명함
 - 공적부문 기업연금은 전통적으로 NHS 공적부문 연금, 경찰 연금, 군인 공공연금, 지방정부 근로자를 위한 연금, 교사 공적연금, 공무원 공적부문 연금 6개로 나누어짐¹⁹³⁾

189) OECD(2021c); 성혜영 외(2019), p. 184; 이상엽·윤성주(2018), pp. 82~83

190) 신국가연금은 1951년 4월 6일 이후 출생한 남성과 1953년 4월 6일 이후 출생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그 전에 출생한 자는 기초국가연금의 적용을 받음(GOV.UK, "The basic State Pension - Overview," <https://www.gov.uk/state-pension>, 검색일자: 2023. 1. 20.)

191) 정인영·정창률·권혁창(2017), pp. 73~75

192) 정인영·정창률·권혁창(2017), pp. 113

[그림 IV-3] 영국의 연금체계

개인연금 (제3층)	개인연금, 자유저축		
기업연금 (제2층)	직장연금(자동등록 NEST, 그 외 직장연금 등)		
공적연금 (제1층)	신국가연금(nSP)		
직군	근로자(공무원 포함)	자영자	기타

주: 영국은 제0층에 해당하는 연금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으나, 연금체계 설명 시 생략하기로 함
 자료: 정인영·정창률·권혁창(2017), p. 3

나. 사적연금제도

- 영국 사적연금(private pension)의 전반적 다층체계를 명확하게 구분 및 단순화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임¹⁹⁴⁾
 - 기존의 3층 보장체계에서 제2층은 반자율(반강제)적인 기업연금의 영역, 제3층은 자율적인 개인연금의 영역이었으나, 영국이 직장연금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이후 그 구분이 모호해짐

- 직장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위해 계약이나 기금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의 전통적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뿐 아니라, 사용자가 기여금을 납부하는 스폰서 역할만 하는 개인계좌 형태의 연금까지 포괄함¹⁹⁵⁾
 - 사용자가 스폰서 역할 정도만 하는 개인계좌형 직장연금으로는 대표적으로 후술할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제도가 있음

193) 정인영·정창률·권혁창(2017), pp. 103~104

194) 정인영·정창률·권혁창(2017), pp. 89~90

195) Ibid

- 그 외에도 개인연금 성격을 지니면서 사용자가 의무는 아니지만 일부 기여를 하는 GPP(Group Personal Pension)가 있음
 - 직장연금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후술할 자동등록 방식이 전통적인 기업 연금이 아닌 직장연금에 적용되기 때문임
- 영국의 사적연금제도 유형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음¹⁹⁶⁾
- DB형 연금제도는 보통 사용자에게 의해 운용되는 연금으로 최종급여(final salary) 또는 커리어 평균(career average) 연금이라 불리기도 함
 - 향후 수령할 금액의 크기는 불입한 금액의 크기나 투자(운용) 결과가 아닌 해당 연금제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직장연금 결정에는 근로자의 급여와 근속 기간 등 수많은 요인이 반영됨
 - 연금 제공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매년 지급하는 금액을 정하여 약속함
 - DC형 연금제도에는 사용자가 가입한 직장연금이나 개인이 직접 가입한 사적연금 등이 포함되며, 현금 구매형 연금(money purchase pension)이라고도 함¹⁹⁷⁾
 - 가입자(근로자) 또는 그의 사용자가 불입한 금액은 연금 제공자에게 의해 투자되고 (예: 주식),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음
 - 향후 수령할 금액의 크기는 불입한 금액, 투자(운용) 결과, 연금수령 방식(예를 들어 연금급여, 일시금 등)의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짐
-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 제2층의 기업연금과 제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연하여 설명하기로 함

196) GOV.UK, "Types of private pensions," <https://www.gov.uk/pension-types>, 검색일자: 2023. 1. 25.

197) GOV.UK, "Personal pensions," <https://www.gov.uk/personal-pensions-your-rights>, 검색일자: 2023. 1. 25.

〈표 IV-13〉 영국 사적연금 유형

사적연금(Private Pension)			
DB형 기업연금	DC형 기업연금	GPP ¹⁾	개인연금(Individual)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기타 사적연금(Personal Pension) ²⁾	
직장연금 (Workplace/Employer sponsored Pension)			개인연금 (Individual Pension)
DB형	DC형		

주: 1) GPP(Group Personal Pension)는 개인연금(personal pension)의 명칭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의 IRP 개념으로 생각하면 퇴직연금, 즉 직장연급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2) 기타 사적연급은 기업연금 외의 사적연급, 즉 개인연금 또는 직장연급과 개인연금의 성격이 결합된 연급 등을 의미함

자료: HM Revenue & Customs, “National statistics - Background and methodology(Updated 30 November 2022),”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personal-and-stakeholder-pensions-statistics/background-and-methodology—2>, 검색일자: 2023. 1. 27.

가) 기업연금

□ 제2층 기업연급은 곧 직장연급(Workplace Pension)을 의미하며, 이는 사용자의 설계를 통하여 근로자가 퇴직연급을 저축하는 방식임¹⁹⁸⁾

- 직장연급의 유형으로는 DB형 기업연급, DC형 기업연급, GPP를 들 수 있음
 - 영국의 GPP는 개인연금의 성격도 가지지만 우리나라의 IRP 개념으로 생각하면 퇴직연급, 즉 직장연급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¹⁹⁹⁾

□ 영국의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연급에 가입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자동가입 제도(automatic enrolment)’라 함²⁰⁰⁾

- 영국은 「연금법(2008 Pension Act)」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직장연급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198) GOV.UK, “Workplace pensions - About workplace pensions,” <https://www.gov.uk/workplace-pensions>, 검색일자: 2023. 1. 24.

199) 정인영·정창률·권혁창(2017), p. 90

200) GOV.UK, “Workplace pensions - Joining a workplace pension,” <https://www.gov.uk/workplace-pensions/joining-a-workplace-pension>, 검색일자: 2023. 1. 24.

- 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될 수 있게 함
- 사용자는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근로자를 자동으로 직장연금 개인계좌에 가입시키고 계좌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 피사용자가 근로자(worker) 계층으로 분류되고 통상 국내에서 일함
 - 근로자가 22세 이상이고 국가연금급여 수급 연령 미만임
 - 근로자의 연 소득이 GBP 10,000 이상임²⁰¹⁾
 -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장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고, 탈퇴를 권유·강요할 수 없음
- 영국은 2012년 또한 자동등록을 특징으로 하는 신탁 기반 DC형 연금제도 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를 도입함²⁰²⁾
- NEST는 모든 근로자들이 소득과 무관하게 저비용으로 양질의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예를 들어 NEST는 금융회사가 고정비용 문제로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NEST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여하며, 정부도 조세 감면의 형태로 일부를 지원함^{203), 204)}
- 2019년 4월 6일부터 사용자는 총소득의 최소 3%를, 근로자는 최소 5%, 즉 최소 총 8%를 직장연금에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함²⁰⁵⁾

201)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익이 월 GBP 520, 주 GBP 120(또는 4주당 GBP 480) 이하면 연금을 납입할 필요 없음

202) 정원석(2017b), p. 3; 정인영·정창률·권혁창(2017), pp. 90~91

203) GOV.UK, "Workplace pensions - What you, your employer and the government pay," <https://www.gov.uk/workplace-pensions/what-you-your-employer-and-the-government-pay>, 검색일자: 2023. 1. 24.

204) The Pension Regulator, "Making contributions to your pension scheme," <https://www.thepensionsregulator.gov.uk/en/employers/new-employers/im-an-employer-who-has-to-provide-a-pension/choose-a-pension-scheme/understanding-your-costs/making-contributions-to-your-pension-scheme->, 검색일자: 2023. 1. 30.

- 근로자가 납입하는 5%의 부담률 중 25%는 세금 감면 대상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기여율은 4%, 정부의 기여율이 1%라 볼 수 있음
- 자동가입제도가 도입된 직후에는 근로자 연간소득의 2%(근로자 0.8%, 고용주 1%, 정부 0.2%)로 기여금 부담 비율이 낮았으나, 2018년 4월 이후 점차 증가하여 현재의 비율을 정립함²⁰⁶⁾

〈표 IV-14〉 영국 NEST 기여율

(단위: %)

구분	~2018년 4월 5일	2018년 4월 6일~ 2019년 4월 5일	2019년 4월 6일~
사용자	1	2	3
근로자 ¹⁾	0.8	2.4	4
정부 ¹⁾	0.2	0.6	1
총 기여율	2	5	8

주: 1) 정부의 기여율은 근로자의 기여율 중 세금 감면 비율(25%) 부분을 계산한 것이며, 실제 납입 시에는 근로자가 정부 부담부분까지 부담함(예: 2019년 4월 6일 이후 근로자 기여율: 5%)

자료: ONS,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Survey, UK: 2018 - Table 1: Automatic enrolment - phased minimum contribution rate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ersonalandhouseholdfinances/pensionssavingsandinvestments/bulletins/occupationalpensionschemessurvey/2018#average-contribution-rates-in-private-sector-occupational-pension-schemes>, 검색일자: 2023. 1. 31.; 정인영·정창률·권혁창(2017), p. 104

□ NEST 외의 직장연금도 사용자와 근로자(가입자)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기여금과 소득 간주 금액은 사용자가 선택한 연금제도에 따라 다름²⁰⁷⁾

○ DC형의 경우 정해진 기여율(보험료율)만큼 납부해야 하지만, DB형의 경우 정해진 적립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메워야 하는 방식으로 기여금 개념이 다소 상이함

205) 어떤 제도하에서는 사용자의 부담률이 더 높으므로 최소 연금보험료율 8%만 충족한다면 근로자의 부담률이 5%보다 줄어들 수 있음

206) 정원석(2017b), pp. 3~4

207) GOV.UK, "Workplace pensions - What you, your employer and the government pay," <https://www.gov.uk/workplace-pensions/what-you-your-employer-and-the-government-pay>, 검색일자: 2023. 1. 24.; 정인영·정창률·권혁창(2017), pp. 104~106

- DC형 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NEST 이상의 기여율만 내면 자동등록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기여율은 자율적으로 결정됨
- <표 IV-15>에서 볼 수 있듯이, DB형 연금의 기여율이 DC형 연금의 기여율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인데, 이는 많은 기업이 더 이상 신규 근로자들에게 DB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가 됨

〈표 IV-15〉 영국 민간부문 기업연금 평균(weighted-average) 기여율

(단위: %)

연도	DB형 기업연금			DC형 기업연금		
	근로자	사용자	총	근로자	사용자	총
2009	5.2	16.5	21.7	2.9	6.4	9.3
2010	5.1	15.8	20.8	2.7	6.2	8.9
2011	4.9	14.2	19.2	2.8	6.6	9.4
2012	4.9	15.2	20.2	3.1	6.6	9.7
2013	5.2	15.4	20.6	2.9	6.1	9.1
2014	5.2	15.8	20.9	1.8	2.9	4.7
2015	5.0	16.2	21.2	1.5	2.5	4
2016	5.8	16.9	22.7	1.0	3.2	4.2
2017	6.0	19.2	25.2	1.2	2.1	3.3
2018	6.4	19.2	25.6	2.7	2.4	5.1

자료: ONS,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Survey, UK Statistical bulletin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ersonalandhouseholdfinances/pensionssavingsandinvestments/bulletins/occupationalpensionschemessurvey/previousReleases>, 검색일자: 2023. 1. 31.; 정인영·정창률·권혁창(2017), p. 105

- DC형 연금의 경우 보통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DB형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와 65세 사이임²⁰⁸⁾
 - DC형의 경우 정부는 2028년부터 연금수급 가능 최저 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상향하기로 함

208) Money Helper, "When can I take money from my pension?,"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taking-your-pension/when-can-i-take-money-from-my-pension>, 검색일자: 2023. 1. 30.

- DB형 연금도 55세부터 수급 가능하지만, 평균 수령 연령보다 일찍 수령하기 시작하면 연금소득의 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일부 기업이 5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최대 55% 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음²⁰⁹⁾

나) 개인연금

- 개인연금은 본인이 직접 마련하는 연금으로 대부분 DC형 연금임^{210), 211)}
 - 일부 사용자는 개인연금을 직장연금으로 제공하기도 함(예: GPP)
 - 개인연금은 자영업자(gig-economy에 종사하는 자 포함), 국가연금 외에 가입한 연금이 없는 자,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양육 또는 보호 등의 사유로 임시 휴직한 자의 사람 등에게 적합한 제도임²¹²⁾
- 개인연금에는 표준 개인연금, 관리연금(stakeholder pension), 자기투자형 개인연금(self-invested personal pensions, 이하 'SIPP') 등이 있음²¹³⁾
 - 표준 개인연금은 대부분 대형 연금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며,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는 편임
 - 관리연금은 저소득자, 임시 불안정 노동자나 실업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개별 적립식 사적연금으로 정부가 규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저비용의 유연한

209) GOV.UK, "Workplace pensions - Managing your pension," <https://www.gov.uk/workplace-pensions/managing-your-pension>, 검색일자: 2023. 1. 25.

210) GOV.UK, "Personal pensions - Overview," <https://www.gov.uk/personal-pensions-your-rights>, 검색일자: 2023. 1. 30.

211) Money Helper, "Personal pension plans - Fees and charges,"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pensions-basics/personal-pensions>, 검색일자: 2023. 1. 30.

212) Money Helper, "Personal pension plans - What is a personal pension?,"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pensions-basics/personal-pensions>, 검색일자: 2023. 1. 30.

213) Money Helper, "Personal pension plans - Types of personal pension,"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pensions-basics/personal-pensions>, 검색일자: 2023. 1. 30.

연금형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²¹⁴⁾

- 수수료에 상한이 존재하고(첫 10년 동안은 연금저축액의 연간 1.5%, 이후에는 연간 1%까지만 청구 가능함), 최소 기여금은 GBP 20 이하여야 함
- 무료 송금이 가능해야 하고, 페널티 없이 언제든지 납입을 중단하거나 재시작할 수 있어야 함

○ SIPP는 일반 개인연금과 유사하지만, 다른 유형에 비하여 광범위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며, 투자의 변경과 추가도 자유로움²¹⁵⁾

□ 개인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상품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5세 이상임²¹⁶⁾

다. 사적연금 과세제도

□ 영국의 공적·사적연금 과세방식은 납입·운용단계에서는 세제혜택이 존재하고, 수령 단계에서 과세하는 EET(면세-면세-과세) 방식임²¹⁷⁾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연금이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²¹⁸⁾

214) 심재진(2005), p. 21; Money Helper, "Stakeholder pensions,"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pensions-basics/stakeholder-pensions?source=mas#>, 검색일자: 2023. 1. 30.

215) Money Helper, "Self-invested personal pensions (SIPPs),"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pensions-basics/self-invested-personal-pensions?source=mas>, 검색일자: 2023. 1. 30.

216) Money Helper, "Personal pension plans - Taking money from your pension,"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pensions-basics/personal-pensions>, 검색일자: 2023. 1. 30.

217) 이상엽·윤성주(2018), pp. 84~85; 정인영·정창률·권혁창(2017), p. 25

218) GOV.UK, "Guidance - Apply to register a pension scheme," <https://www.gov.uk/guidance/pension-administrators-register-a-scheme>, 검색일자: 2023. 1. 30.

1) 납입금에 대한 과세

- 사적연금에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소득공제)되는데, 이때 한도는 연간 한도(Annual Allowance, AA)와 평생 한도(Lifetime Allowance, LTA)로 구분할 수 있고 각 한도는 매년 조정됨²¹⁹⁾
 - 반면 사용자가 부담한 직장연금 기여금은 전액 비용으로 공제 허용함²²⁰⁾

- 연간 한도(AA)는 2022/23 과세연도 기준 GBP 40,000임²²¹⁾
 - 즉 1개 과세연도(4월 6일부터 익년 4월 5일까지) 동안 연금 기여금을 GBP 40,000 넘게 불입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종합과세함²²²⁾
 - 연간 한도 금액은 2013/14 과세연도까지 GBP 50,000이었다가 2014/15 과세연도부터 GBP 40,000으로 감소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²²³⁾
 - 다만 2015/16 과세연도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²²⁴⁾의 도입을 앞두고 연간 한도 관련해서만 과세연도를 두 개로 나누어 각 기간에 별도 한도를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음²²⁵⁾

219) GOV.UK, "Tax on your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https://www.gov.uk/tax-on-your-private-pension>, 검색일자: 2023. 1. 24.; 이상엽·윤성주(2018), p. 85

220) GOV.UK, "PTM043100 - Contributions: tax relief for employers: introduc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43100>, 검색일자: 2023. 1. 24.

221) OECD(2022a), p. 101

222) GOV.UK, "Tax on your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 Annual allowance," <https://www.gov.uk/tax-on-your-private-pension/annual-allowance>, 검색일자: 2023. 1. 24.

223) GOV.UK, "Guidance - Pension schemes rates(Updated 6 April 202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pension-schemes/pension-schemes-rates>, 검색일자: 2023. 3. 23.

224) 정부는 2015년 7월 8일 2016/17 과세연도부터 고소득자에 대하여 연간 한도를 일정 비율씩 점감하여 적용하는 제도(후술 예정)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225) GOV.UK, "Guidance - Pensions technical note: transitional provisions for aligning pension input periods(Published 8 July 20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ensions-technical-note-transitional-provisions-for-aligning-pension-input-periods/pensions-technical-note-transitional-provisions-for-aligning-pension-input-periods>, 검색일자: 2023. 3. 23.

- 연간 한도는 2015년 4월 6일부터 2015년 7월 8일(정책 발표일)까지 GBP 80,000, 2015년 7월 9일부터 2016년 4월 5일까지 0으로 하였음
- 이는 2016년 4월 6일까지 연금 납입기간을 과세연도와 일치시키고, 이미 이루어진 납입에 대한 소급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경과 규정임
- 사적연금에 연간 불입한 기여금이 적거나 소득이 높아서 연간 한도(AA)를 모두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그 잔여 금액은 3년까지 이월 가능함
 - 연간 불입한 기여금은 유연하게 조정하여 금액이 낮을 수 있음
- 연간 한도(AA)는 2016년 4월 6일부터 조정소득(adjusted income)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 축소하여 적용함²²⁶⁾
 - 연금납입액을 포함한 조정소득이 GBP 240,000(2023년 기준)²²⁷⁾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 한도가 초과소득의 50%씩(GBP 2당 GBP 1씩) 줄어들며, 이때 최소 연간 한도액(Tapered Annual Allowance Minimum)은 GBP 4,000임²²⁸⁾
 - 조정소득 기준 금액은 동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6/17 과세연도부터 2019/20 과세연도까지 GBP 150,000을, 2020/21 과세연도부터 GBP 240,000을 적용함
 - 최소 연간 한도액 또한 2016/17 과세연도부터 2019/20 과세연도까지는 GBP 10,000이었으나, 2020/21 과세연도 이후 GBP 4,000을 적용함
- 평생 한도(LTA)는 총 연금자산의 가치로서 2022/23 과세연도 기준 GBP 1,073,100 이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연금자산은 수령시점에 과세함²²⁹⁾

226) GOV.UK, "Guidance - Pension schemes rates(Updated 6 April 202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pension-schemes/pension-schemes-rates>, 검색일자: 2023. 3. 23.

227) GOV.UK, "PTM057100 - Annual allowance: tapered annual allowance,"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57100>, 검색일자: 2023. 1. 30.

228) GOV.UK, "Guidance - Work out your reduced (tapered) annual allowance," <https://www.gov.uk/guidance/pension-schemes-work-out-your-tapered-annual-allowance>, 검색일자: 2023. 1. 24.

229) GOV.UK, "Tax on your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 Lifetime allowance," <https://www.gov.uk/tax-on-your-private-pension/lifetime-allowance>, 검색일자: 2023. 1. 24.

- 총 연금자산의 가치는 DC형 연금의 경우 연금 적립금액을, DB형 연금의 경우 첫 해에 수령하는 연금급여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시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 평생한도는 2011/12 과세연도 기준 GBP 1,800,000에서 2016/17~2017/18 과세연도 기준 GBP 1,000,000까지 감소하다가 2018/19 과세연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0/21 과세연도 이후로는 GBP 1,073,100을 유지하고 있음²³⁰⁾

〈표 IV-16〉 영국의 사적연금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 연혁

(단위: GBP)

과세연도	연간 한도(AA)	평생 한도(LTA)
2011/12	50,000	1,800,000
2012/13	50,000	1,500,000
2013/14	50,000	1,500,000
2014/15	40,000	1,250,000
2015/16	2015년 4월 6일~2015년 7월 8일: 80,000, 2015년 7월 9일~2016년 4월 5일: 0 ¹⁾	1,250,000
2016/17	40,000	1,000,000
2017/18	40,000	1,000,000
2018/19	40,000	1,030,000
2019/20	40,000	1,055,000
2020/21	40,000	1,073,100
2021/22	40,000	1,073,100
2022/23	40,000	1,073,100

주: 1) 정부가 2015년 7월 8일 2016/17 과세연도부터 고소득자에 대하여 연간 한도를 일정 비율 축소하여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소급과세를 막기 위하여 경과 규정을 둔 것임

자료: GOV.UK, "Guidance - Pension schemes rates(Updated 6 April 202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pension-schemes/pension-schemes-rates>, 검색일자: 2023. 3. 23.

230) GOV.UK, "Guidance - Pension schemes rates(Updated 6 April 202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pension-schemes/pension-schemes-rates>, 검색일자: 2023. 3. 23.

- 연금 납입단계의 세제혜택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됨²³¹⁾
 - 직장연금 중 DB·DC형 기업연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²³²⁾ 전에 연금납입액을 선취하여 연금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취함
 - 따라서 개인은 연금납입액 공제 후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함
 - 그 외 사적연금(기타 직장연금 및 개인연금)은 연금제공자가 세제혜택을 신청하고 해당 금액이 개인연금계좌에 입금되도록 신청하는 방식을 취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또는 개인이 자신의) 세후 소득에서 연금납입액을 지급하면 연금제공자가 정부에 대하여 납입액의 20%(기본 소득세율)를 환급 청구하고 해당 금액이 개인의 연금계좌로 입금됨
 - 다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40%(또는 45%)이면 기본세율과의 차이 20%(또는 25%)를 개인이 직접 세금신고서 등으로 국세청에 청구해야 함

- 개인연금 중 SIPP에 가입자가 불입하는 기여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기본세율(basic-rate)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²³³⁾
 - 또한 고세율(higher-rate) 납세자의 경우 최대 GBP 500까지, 최고세율(additional-rate) 납세자의 경우 최대 GBP 625까지 추가 세금 감면(소득공제)이 가능함

2)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 등록된 사적연금을 연금 목적을 위해 보유하면 그 투자소득 및 예금에서 파생된 소득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과세함²³⁴⁾

231) OECD(2022a), p. 101; 이상엽·윤성주(2018), p. 86

232) 이때의 소득세율은 20%임

233) Money Helper, "Self-invested personal pensions (SIPPs) - Do I get tax relief on contributions to a SIPP?,"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pensions-basics/self-invested-personal-pensions?source=mas>, 검색일자: 2023. 1. 30.

234) GOV.UK, "PTM024400 - General principles: overview of pensions taxation: investmen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24400>, 검색일자: 2023. 1. 30.; OECD(2022a). p. 102

- 투자 규제 연금 상품을 통해 보유한 유형자산 또는 주거용 부동산 등 과세 상품
- 연금계좌로 지급된 배당금
- 부동산 투자 유한책임파트너십(LLP) 조합원의 투자 또는 예금 파생소득

3)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 연금자산을 인출할 때에는 인출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소득세가 부과됨²³⁵⁾
 - 물론 연간 총소득이 면세점인 GBP 12,570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음²³⁶⁾

- 영국은 2015년 4월 ‘연금 자유화 정책(pension freedoms)’²³⁷⁾을 도입하여 55세 이상의 연금 가입자들의 DC형 연금수령 방법을 유연화함^{238), 239)}
 - 2015년 이전 영국 정부는 DC형 연금에 적립된 자산으로는 무조건 종신연금(life annuity) 또는 변동급여(drawdown)만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연금의무화), 퇴직자산을 퇴직소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음
 - 변동급여(drawdown)는 적립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에 따라 매일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주식 및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생활자금이 유동적일 수 있음²⁴⁰⁾
 - 그러나 정부는 퇴직자에게 유연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2015년 4월 6일 이후 55세 이상의 모든 퇴직자에게 일시금 인출을 허용하고 그 방식을 다양화함

235) 이상엽·윤성주(2018), p. 86

236) GOV.UK, “Tax when you get a pension,” <https://www.gov.uk/tax-on-pension/tax-free>, 검색일자: 2023. 2. 5.

237) 또는 연금 유연성 정책(pensions flexibility rules)이라 함(HM Treasury, 2014, pp. 5~6)

238) UK Parliament(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 Pension freedoms: transfers from 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s(Published Tuesday, 19 May, 2020),”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8382/>, 검색일자: 2023. 1. 31.

239) 홍원규(2021), pp. 2~4; 정원석(2017a), p. 3

240) 정원석(2016), p. 10

- 현재 영국은 사적연금 전반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금 수요에 맞는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을 허용하며, 그 방법은 크게 연금급여(annuity), 변동급여(drawdown), 일시금(lump-sum)으로 나눌 수 있음²⁴¹⁾
- 연금소득 과세는 연금급여 외 대부분의 경우 총연금 저축액의 최대 25%까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242), 243)}

〈표 IV-17〉 영국 종합소득세율(2022/23 과세연도 기준)

(단위: GBP, %)

구간	과세표준	세율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 12,570	0
기본세율(Basic rate)	12,571 ~ 50,270	20
고세율(Higher rate)	50,271 ~ 150,000	40
최고세율(Additional rate)	150,000 ~	45

자료: GOV.UK, "Income Tax rates and Personal Allowances - Income Tax Rates and Bands," <https://www.gov.uk/income-tax-rates>, 검색일자: 2023. 1. 31.

- 이하 연금수령 방법과 과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 연금급여(annuity)는 보통 종신연금의 형태로 지급되지만, 연금수령 시기와 금액, 사망 시 연금을 승계할 사람 등의 요소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244), 245)}

241) Age UK(2022), pp. 5~7; 정원석(2017a), p. 3

242) GOV.UK, "Tax when you get a pension," <https://www.gov.uk/tax-on-pension/tax-free>, 검색일자: 2023. 1. 25.; Age UK(2022), pp. 6~8

243) Money Helper, "Taking your pension as a number of lump sums,"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taking-your-pension/taking-your-pension-as-a-number-of-lump-sums>, 검색일자: 2023. 1. 30.

244) GOV.UK, "PTM062400 - Member benefits: pensions: lifetime annuity,"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62400#Taxationofalifetimeannuitycontract>, 검색일자: 2023. 1. 30.

245) Money Helper, "Buying an annuity: annuity options and shopping around,"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taking-your-pension/annuity-options-and-shopping-around>, 검색일자: 2023. 2. 18.

- 과세대상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금 급여액으로, 가입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연금급여는 근로소득 및 사회보장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PAYE²⁴⁶) 시스템을 통하여 징수됨²⁴⁷)
- 변동급여(drawdown)는 연금자산의 일부를 인출하고 남은 금액은 계속 투자 후 변동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퇴직소득(flexible retirement income) 또는 결정형 연금펀드(Crystallized Pension Fund)라고도 함²⁴⁸)
- 상한소득 변동급여(capped income drawdown): 인출 소득에 상한을 둔 제도로, 2015년 4월 6일 이후 신규가입이 금지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만 동 규정을 적용함²⁴⁹)
 - 연금 기금에서 처음에 비과세 연금개시 일시금(Pension Commencement Lump Sum, PCLS)을 받은 후 남은 자금은 계속해서 결정화된 연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남은 자금 중 필요 소득은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함
 - 탄력 변동급여(Flexi-Access Drawdown, 이하 ‘FAD’): 연금 저축액의 최대 25% 까지 일시금으로 수령한 뒤 나머지 부분은 투자하면서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수령하도록 한 제도로, 연금 자유화 이후 도입되었음^{250, 251})

246) PAYE 시스템은 각 개인에게 소득 지급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용자, 연금 제공자 등에게 세금을 원천 징수 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247) 즉 연금 제공자는 소득세를 차감 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함(GOV.UK, “EIM11801 - PAYE: background to PAYE on special types of payment: introduc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11801>, 검색일자: 2023. 1. 30.

248) 정원석(2016), p. 11

249) Money Helper, “Capped drawdown,”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taking-your-pension/capped-drawdown>, 검색일자: 2023. 2. 1.

250) FAD 도입 전에 가입자가 연간 GBP 12,000의 세전소득이 보장된 경우 적립금에서 변동급여를 무제한 인출할 수 있던 Flexible Drawdown 제도가 있었으나, 2015년 4월 이전에 설정된 모든 Flexible Drawdown 방식은 2015년 4월 이후 FAD로 전환됨

251) Money Helper, “What is flexible retirement income (pension drawdown)?,”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taking-your-pension/what-is-flexible-retirement-income-pension-drawdown>, 검색일자: 2023. 1. 30.

- 변동급여 방식으로 인출 시 총연금 저축액의 25%까지는 비과세 일시금 인출 가능하고, 초과 인출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함²⁵²⁾
 - 예를 들어 연금 저축액이 GBP 60,000인 경우, 이 중 25%에 해당하는 GBP 15,000은 비과세하고 남은 GBP 45,000은 다른 소득과 합산 후 개인의 한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다만 변동급여 방식 중 '상한소득 변동급여'는 이전 가입자들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을 추가로 적용함²⁵³⁾
 - 2015년 4월 이후 일시금 인출 한도²⁵⁴⁾만 유지하면 매년 일정 한도 금액을 계속 기여할 수 있고 이는 과세하지 않음
 - 일시금 인출 한도는 보험계리부(Government Actuarial Department, 이하 'GAD') 기본요율의 150%임²⁵⁵⁾
 - GAD 기본요율은 연금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인출액 GBP 1,000당 인출할 수 있는 기본연금 금액을 의미하며, GAD 기본요율은 영국 정부에서 공시하는 값²⁵⁶⁾을 참고해야 함
 - 일시금 인출 한도 유지 시 비과세 기여금의 연간 한도는 GBP 40,000임
 - 일시금 인출 한도 초과 시 해당 연금은 자동으로 탄력 변동급여(FAD)로 전환되고, 저축액 중 비과세 금액 한도는 현금 구매형 연간 한도(Money Purchase Annual Allowance, MPAA)로 감소함
 - 2021/22 과세연도 기준 MPAA는 GBP 4,000임

252) Ibid

253) Money helper, "Capped drawdown,"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taking-your-pension/capped-drawdown>, 검색일자: 2023. 2. 6.

254) 연금 관리자는 일시금 인출 한도를 최소 3년마다(75세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검토해야 함

255) Dentons Pensions, "GAD rates," <https://www.dentonspensions.co.uk/Technical/Retirement-options/GAD-Rates/>, 검색일자: 2023. 3. 27.

256) GOV.UK, "Guidance - Work out a basis amount using drawdown pension tabl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rawdown-pension-tables>, 검색일자: 2023. 3. 27.

- 가입자는 연금을 법정 일시금(lump sum) 형태로 인출할 수도 있는데, 아래 경우 모두 연금자산의 25%까지는 비과세하고, 75%는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함^{257), 258)}
 - 비결정형 연금 일시금(Uncrystallised Funds Pension Lump Sums, UFPLS): 자유화 이후 시행된 수시 인출 가능 펀드로, 보유 중인 미결정 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²⁵⁹⁾
 - 소액 일시금(small pots lump sum): 한 번에 최대 GBP 10,000까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서로 다른 개인연금에서 3번까지 소액 일시금 인출이 가능함
 - 직장연금에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소액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되, 인출 한도는 연금상품별로 다르므로 상품 제공자에게 확인해야 함²⁶⁰⁾
 - 경미한 일시금(trivial commutation lump sum): DB형 연금의 경우 연금자산²⁶¹⁾ 가치가 GBP 30,000 이하이면서 아래 요건 충족 시 전액 인출 가능함²⁶²⁾
 -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질병 등으로 더 일찍 은퇴한 경우여야 함
 - 12개월 이전에 경미한 일시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2006년 4월 6일 이전에 받은 것은 무관함), 해당 연금상품이 경미한 일시금 인출을 허용해야 함

257) GOV.UK, “Tax when you get a pension,” <https://www.gov.uk/tax-on-pension/tax-free>, 검색일자: 2023. 1. 25.; GOV.UK, “EIM75420 - The taxation of pension income: lump sums paid to registered scheme member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75420>, 검색일자: 2023. 2. 2.

258) Money helper, “Taking your whole pension pot in one go - Taking your defined benefit pension as a lump sum,”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taking-your-pension/taking-your-whole-pension-in-one-go?source=tpas#>, 검색일자: 2023. 1. 30.

259) GOV. UK, “PTM063300 - Member benefits: lump sums: uncrystallised funds pension lumpsum(UFPL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63300>, 검색일자: 2023. 2. 1.

260) Money helper, “Taking your whole pension pot in one go - Small pot lump sums,”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taking-your-pension/taking-your-whole-pension-in-one-go?source=tpas#>, 검색일자: 2023. 1. 30.

261) 국가연금을 제외한 직장·개인연금을 포함함

262) GOV.UK, “PTM063500 - Member benefits: lump sums: trivial commutation lump sum,”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ensions-tax-manual/ptm063500>, 검색일자: 2023. 2. 3.

- 일시금 인출 시 총 사적연금 자산이 평생 한도(LTA) 이하여야 함
 - 그 외 다른 연금제도로 이전할 때 제공되는 청산 일시금(winding-up lump sum) 인출 제도가 있음
- 일시금에는 위 방식 외에 연금개시 일시금(Pension Commencement Lump Sum, PCLS)도 있는데, 보통 한도 내에서 인출한 연금개시 일시금(PCLS)은 비과세함²⁶³⁾
- 연금개시 일시금(PCLS) 인출 제도란 가입자가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할 때 ‘연금 자산의 25%’와 ‘평생 한도(LTA)의 25%’ 중 적은 금액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함
 -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연금개시 일시금으로 보지 않고 고세율로 과세될 수 있음
- 영국은 또한 가입자가 심각한 질병 등으로 기대수명이 1년 미만일 경우, 연금자산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한 중증 질병 일시금(serious ill-health lump sum)을 두고 있음²⁶⁴⁾
- 다만 가입자의 총 연금자산이 평생 한도(LTA) 이하여야 함
 - 중증 질병 일시금 수령 시 75세 미만이면 전액 비과세하고, 75세 이상이면 소득세를 부과함
 - 어떤 연금펀드는 배우자나 동성파트너를 위하여 최소 50%의 금액을 연금에 유지하도록 하기도 함
- 사적연금 자산이 평생 한도(2022/23 과세연도 기준 GBP 1,073,1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인출방식에 따라 다른 세율로 분리과세함²⁶⁵⁾

263) GOV.UK, “EIM75420 - The taxation of pension income: lump sums paid to registered scheme member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75420>, 검색일자: 2023. 2. 2.

264) GOV.UK, “Tax when you get a pension,” <https://www.gov.uk/tax-on-pension/tax-free>, 검색일자: 2023. 1. 25.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55%
- 연금급여 또는 변동급여(drawdown)로 수령하는 경우: 25%
- 인출 시 평생 한도금액 초과금액 외의 금액은 개인의 한계 소득세율로 과세함

〈표 IV-18〉 영국 사적연금 수령 방법 및 과세 방법

구분		수령 방법 특징	수령 시 과세
연금급여(Annuity)		주로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함 ¹⁾	종합과세
변동 급여 (Draw- down) ²⁾	상한소득 변동급여 (Capped Income Drawdown) ³⁾	연금 수령액은 적립금수익률에 따르며, 연간 상한액 이내에서만 수령 가능	25%: 비과세, 75%: 종합과세
	탄력 변동급여 (FAD)	연금 수령액은 적립금수익률에 따르며, 25% 비과세 일시금 인출 후 자유롭게 수령 가능	
일시금 (Lump Sum)	연금개시 일시금 (PCLS)	연금 첫 수령 시 일시금 인출 가능	비과세 ⁴⁾
	비결정형 연금 일시금(UFPLS)	보유 중인 미결정 자금 일시금 인출 가능	25%: 비과세, 75%: 종합과세
	소액 일시금 (Small Pots Lump Sum)	한 번에 소액(GBP 10,000 이하)으로 최대 3번까지 일시금 인출 가능	
	경미한 일시금 (Trivial Commutation Lump Sum)	DB형에만 적용, 전체 사적연금 자산가치가 GBP 30,000 이하이면 일시금 인출 가능	

- 주: 1) 다만 연금수령 시기와 금액, 사망 시 연금을 승계할 자 등 요소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음
 2) 변동급여(drawdown)는 적립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주식 및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수령금액이 유동적일 수 있음
 3) 상한소득 변동급여의 경우 일시금 인출한도(보험계리부 기본 요율의 150%)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면 기여금도 일정 한도(£40,000)까지 비과세하고, 인출한도 초과 시 비과세한도는 £4,000로 감소함
 4) 연금개시 일시금 인출금액은 Min[연금자산의 25%, 평생 한도(LTA) 금액의 25%]까지만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중과할 수 있음

자료: GOV.UK, "EIM75420 - The taxation of pension income: lump sums paid to registered schememember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mployment-income-manual/eim75420>, 검색일자: 2023. 2. 2.; 정원석(2017a), p. 3, 〈표 1〉 형식 참고

265) OECD(2022a), p. 102; 이상엽·윤성주(2018), p. 87; GOV.UK, "Tax on your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 Lifetime allowance," <https://www.gov.uk/tax-on-your-private-pension/lifetime-allowance>, 검색일자: 2023. 1. 24.

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사적연금제도

1) 퇴직·기업연금

-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 모두 퇴직·기업연금은 퇴직급여가 정해진 DB형 제도와 사용자가 정해진 부담금을 기여하는 방식의 DC형 제도를 운용함
-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로 이원화되는데 사용자가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고, 이 중 퇴직연금제도 안에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이 있음
- 미국은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C형의 대표적인 제도가 401(k)임
 -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 유형이 있으며 과세상 차이가 있음
- 독일의 기업연금 제도는 대부분 DB형으로 운영되며 직접보장, 지원금고,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펀드 5개의 유형이 있음
 - 이중 연금펀드는 DC형으로도 운영 가능함
- 영국의 직장연금에도 DB형 기업연금 및 DC형 기업연금이 있는데, 2012년 자동가입 방식의 DC형 연금제도 NEST를 도입하면서 DC형 가입자의 비중이 증가함

2) 기타 사적연금

-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은 모두 기업형 퇴직연금 외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개인연금을 포함한 기타 사적연금제도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계좌'를 두어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함
 - 미국의 경우 개인퇴직계좌(IRA)가 Traditional IRA와 Roth IRA 등의 형태로 운영됨
 - Traditional IRA는 가입자(또는 그의 배우자)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기여금 공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Roth IRA는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음
 - 독일은 공적연금 급여 축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대 초반 개인연금제도로 리스터연금과 뤼플연금을 도입하였음
 - 리스터연금은 법정연금 의무가입자 중 저소득 임금 근로자를 주 가입대상으로 하고,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함
 - 뤼플연금은 법정연금 의무가입자에서 배제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 영국은 개인연금 명칭을 가지지만 사용자가 일부 기여할 수 있는 DC형의 GPP(Group Personal Pension)을 두고 있고, 그 외 이해당사자 연금을 포함한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함

〈표 V-1〉 사적연금제도 국제비교

구분	DB형 퇴직·기업연금	DC형 퇴직·기업연금	기타
한국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미국	DB형 퇴직연금	401(k): Traditional 401(k), Roth 401(k) 등	개인퇴직계좌(IRA): Traditional IRA, Roth IRA 등
독일	직접보장, 지원금고,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펀드 ¹⁾	연금펀드 ¹⁾	리스터연금, 뤼롭연금 등
영국	DB형 기업연금	DC형 기업연금 (예: NEST)	GPP, 이해당사자 연금 등 개인연금

주: 1) 독일의 연금펀드는 DB형 또는 DC형 방식 운영 모두 가능함
자료: 본문 내용 요약 정리

나. 사적연금 과세제도

-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은 사적연금 과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EET(면세-면세-과세) 체계를 취하고 있음

1) 납입금에 대한 과세

- 사적연금 납입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영국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
- 우리나라는 종합(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을 종합(또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은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을 한도로 함²⁶⁶⁾
 - 사적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전체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임

266) 2023년부터 적용 금액이며, 2022년까지는 한도금액이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이었음

-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총급여액이 5,500만원)이하인 경우 15%, 초과인 경우 12%임
- 영국은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일정 한도(연간 한도 또는 평생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허용함
 - 연간 한도(AA)는 일반적으로 GBP 40,000이고, 납입한 기여금이 적어 연간 한도까지의 금액이 남을 경우 해당 금액은 3년까지 이월 가능함
 - 조정소득 GBP 240,000 초과 고소득자는 연간 한도가 초과소득의 50%씩(GBP 2당 GBP 1씩) 감소하되, 최소 연간 한도는 GBP 4,000임
 - 평생 한도(LTA)는 총 연금자산의 가치에 대하여 2022/23 과세연도 기준 GBP 1,073,100이고, 한도 초과 시 연금수령 시점에 과세함
- 미국과 독일은 퇴직·기업연금과 개인연금 납입한도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함
 - 다만 미국은 중소득층 이하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Saver's Credit 혜택을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전반에 걸쳐 제공함
 - 이는 IRA 또는 고용주가 후원하는 퇴직연금에 적격한 기여금을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는 신고유형별 AGI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만큼 최대 USD 1,000(부부합산의 경우 USD 2,000)까지 받을 수 있음
- 미국 퇴직연금과 독일 기업연금은 모두 개인이 일정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기여금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납입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안 되고, DC형인 401(k)는 세전소득에서 기여금이 지급되므로 납입한도 내 기여금은 소득공제가 되며, Roth 401(k)는 세후소득에서 납입하므로 소득공제가 안 됨
 - 401(k)의 납입한도는 근로자만 납입 시 USD 22,500(50세 이상 USD 30,000),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납입 시 USD 66,000(50세 이상 USD 73,500)임(2023년 기준)
 - Roth 401(k)는 납입 시 세제혜택이 없으나 인출 시 기여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독일의 경우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펀드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기여금은 한도 내 비과세, 직접보장과 지원금고에 대한 근로자 기여금은 전액 비과세함
 -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펀드 기여금 한도는 사회보장기여금 한도의 8%인 월 EUR 584, 연 EUR 7,008(2023년 기준)임
- 미국과 독일의 개인연금 역시 제도별로 정하고 있는 한도까지 기여금 소득공제를 허용함
 - 미국의 개인연금계좌 중 Traditional IRA는 직장 퇴직연금 대상자는 한도 내에서 기여금을 소득공제하는 반면, Roth IRA는 기여금 공제가 불가능하고 기여금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액에 대하여 6%의 세금(excise tax)을 부과함
 - Traditional IRA의 납입한도는 보통 2023년 기준 최대 USD 6,500(50세 이상 USD 7,500)인데, 독신·부부 여부 등의 신고유형과 수정 AGI에 따라 달라짐
 - Roth IRA는 Traditional IRA도 함께 적용하면 신고유형, 수정 AGI에 따라 기여금 납입한도가 달라지지만, Roth IRA만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2023년 기준 USD 6,500(50세 이상 USD 7,500)임
 - 한도 초과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한도 미달 시 적용 가능함
 -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뤼뎀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음
 - 리스터연금은 한도 내에서 수령한 보조금과 납입한 기여금 전체에 대하여 연 EUR 2,100(또는 2,160²⁶⁷)까지 공제 가능함
 - 보조금은 가입자 1인당 기본보조금 EUR 175, 자녀 1인당 자녀보조금 EUR 185(2008년 이후 출생: EUR 300), 그리고 25세 미만인 경우 EUR 200(1회 지급 가능)으로 이루어짐
 - 뤼뎀연금은 납입 기여금의 일정 비율을 2023년 기준 최대 EUR 26,528(부부의 경우 EUR 53,056)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비율은 2023년 기준 96%로 매년 2%p씩 증가하여 2025년 이후부터는 전액 공제 가능해짐
 - 최대 공제금액은 광부연금제도에서 정하는 최대금액에 따라 달라짐

267) 보조금 수급 적격자의 배우자 및 동성파트너도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들 자신의 리스터연금에 연간 최소 EUR 60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래의 보조금 적격 배우자(또는 동성파트너) 기여금 공제 한도는 EUR 2,160으로 상향됨

〈표 V-2〉 사적연금 납입금 과세제도(개인) 국제비교¹⁾

구분	퇴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
한국	기여금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내 세액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 납입한도: 900만원(60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종합소득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초과): 15%(12%)	
미국	401(k) ²⁾ : 기여금 한도 내 소득공제 - 근로자 한도: USD 22,500(50세 이상 USD 30,000) - 근로자+고용주 한도: USD 66,000(50세 이상 USD 73,500)	Traditional IRA: 기여금 한도 내 소득공제 - 한도: Min[과세대상 보상, ³⁾ USD 6,500 (50세 이상 USD 7,500)] · 한도초과분 1년 이월 가능
	Roth 401(k) ²⁾ : 기여금 소득공제 불가	Roth IRA: 기여금 공제 불가, ⁴⁾ 납입한도 초과분: 6% 세금 과세 - 납입한도: USD 6,500 (50세 이상 USD 7,500), 고소득자는 한도 감소 · 한도 초과분 1년 이월 가능
	Saver's Credit: IRA·고용주 후원 퇴직연금 기여금 세액공제 최대 USD 1,000(부부: USD 2,000)	
독일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펀드: 기여금 한도 내 소득공제 - 한도: 사회보장기여금 한도의 8% (월 EUR 584, 연 EUR 7,008)	리스터연금: [기여금+수령 보조금 ⁵⁾] 한도 내 소득공제 - 한도: EUR 2,100
	직접보장, 지원금고: 기여금 전액 소득공제	뮌헨연금: 기여금의 96%(2025년부터 100%) 한도 내 소득공제 - 한도: EUR 26,528(부부: EUR 53,056)
영국	기여금 한도 내 소득공제 - 연간 한도(AA): 일반적으로 GBP 40,000, 한도 미달분 3년 이월 가능, 고소득자는 한도 감소 - 평생 한도(LTA): 총 GBP 1,073,100까지 납입 가능, 한도 초과분 연금수령 시 과세	

주: 1) 표 안에 제시된 한도는 별도 언급하지 않는 한, 모두 2023년도(영국의 경우 2022/23년도) 기준 금액임
 2) 401(k)는 세전소득에서 기여금이 지급되므로 납입 금액만큼 소득공제되는 효과가 있으나, Roth 401(k)는 세후소득에서 기여금이 지급되므로 소득공제가 안 되고, 대신 인출 시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3) 과세대상 보상에는 급여, 커미션, 자영업 소득, 과세대상 위자료, 비과세대상 장학금 등이 포함됨
 4) 기여금을 공제할 수 없으나, 수령 시점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적격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됨
 5) 리스터연금 보조금은 기본보조금 EUR 175, 자녀 1인당 EUR 185(2008년 이후 출생: EUR 300), 그리고 25세 미만인 경우 EUR 200(1회 지급 가능)으로 이루어짐
 자료: 본문 내용 요약·정리

2)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사적연금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비과세함
 - 다만 독일의 기업연금 중 직접보장의 운용수익은 과세대상인데, 발생시점과 수령 시점 중 언제 과세하는지는 불분명함

〈표 V-3〉 사적연금 운용수익 과세제도(발생단계) 국제비교

구분	사적연금 운용수익 발생단계 과세 여부
한국	비과세
미국	비과세
독일	비과세
영국	비과세

자료: 본문 내용 요약·정리

3)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사대상국은 모두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방법에 상관없이 연금 소득을 종합과세하되, 영국은 연금외수령 시 25%까지는 비과세하고 있음²⁶⁸⁾
 - 우리나라는 연금계좌 인출금 중 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실적 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연금수령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연금외수령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연금수령 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최대 900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분리과세함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또는 70%)만큼 원천징수하여 무조건 분리과세함

268) 또한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 모두 납입 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기여금에 대하여는 수령 시 과세하지 않음

-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연금수령하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그 외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하며 세율은 3~5%²⁶⁹⁾임
-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의 분리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 연금외수령은 연금수령 외의 인출과 연금수령한도²⁷⁰⁾를 초과한 인출을 말하며,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세율: 15%)함
- 미국은 연금급여의 형태로 받는 정기적 급여와 그 외 형태의 분배금인 비정기적 급여 모두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여 종합과세함
 - 정기적 급여에서 원금 등 비과세대상을 차감·제외하여 연금소득을 산출함
 - 비과세대상에는 세후소득으로 납입한 기여금, Roth 계정에서 받은 적격 분배금 등이 있음
 - 비정기급여의 과세소득은 연금개시일 이후 분배이면 전액을 과세함
 - 미국은 그 외에 59.5세 이전의 조기인출에 대하여 10%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나 72세가 된 다음 해까지 분배금 수령을 청구하지 않으면 미분배금에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무분배 규정도 두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연금급여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일정 부분을 비과세 또는 공제 후 종합소득에 포함하되, 일시금은 전액 종합소득에 포함함
 - 직접보험, 연금공고, 연금펀드 또는 리스터연금, 뮌헨연금에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수령금액의 2023년 기준 83%(2040년 이후 100%)를 종합소득에 포함함
 - 직접보장, 지원금고에서 수령하는 연금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2023년 기준 연금수령액의 13.6%(EUR 1,020 한도)와 EUR 306만유로 공제가 허용됨 (2040년부터는 공제 혜택 없음)

269) 세율은 연금소득자의 연령이 70세 미만이면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이면 3%를 적용하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4%를 적용함

270)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이고',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시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봄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공제와 같은 감면 없이 전액 과세하되, 향후 5년간 균등분할 수령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일시금은 주로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펀드 또는 리스터연금에서 60세(또는 62세) 이후 연금 적립액의 30%(2005년 이전 계약은 20%)까지 인출 가능하고, 이후 잔여자산은 연금급여 형태로 받도록 규정함
- 영국의 사적연금 인출방식에는 크게 연금급여, 변동급여(drawdown), 일시금이 있는데, 연금급여는 종합과세하고 그 외의 경우 대부분 총 사적연금자산의 최대 25%까지 비과세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은 종합과세함
 - 단 사적연금자산이 평생 한도(LTA)인 GBP 1,073,100(2022/23 과세연도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시 55%, 연금으로 수령 시 25%를 과세함

〈표 V-4〉 사적연금 연금소득 과세제도 국제비교^{1), 2)}

구분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 종합과세 · 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소득금액 ≤ 1,200만원: 3~5%³⁾ · 연금소득금액 > 1,200만원: 15%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소득 분리과세(15%)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 종합과세 - 조기인출에 대한 과세: 59.5세 이전 조기인출 분배금의 10% 추가세금 부과 - 의무분배 규정: 72세가 된 해의 다음 해까지 분배금 수령 미청구 시 미분배금의 50% 세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소득 종합과세 · 연금개시일 이후 분배: 보통 전액과세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보험·연금금고·연금펀드, 리스터연금·뤼플연금: 기타소득 종합과세 · 연금급여의 83%(2040년부터 100%) 과세 - 직접보장·지원금고: 근로소득 종합과세 · 연금급여의 13.6%(최대 €1,020)+€306 공제(2040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금⁵⁾: 종합과세 · 감면(비과세·공제) 없이 전액과세 · 향후 5년간 균등분할 수령으로 간주

〈표 V-4〉의 계속

구분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영국	- 연금급여 종합과세	- 변동급여(drawdown), ⁶⁾ 일시금: 보통 총 사적연금자산의 25%까지 비과세 (일시금 인출 가능), 초과 금액 종합과세
	- 사적연금자산 저축액 중 평생 한도(LTA)인 GBP 1,073,100(2022/23 과세연도 기준) 초과금액: 일시금 수령 시 55%, 연금으로 수령 시 25%로 과세	

- 주: 1) 표 안에 제시된 모든 한도는 2023년도(영국의 경우 2022/23년도) 기준 금액임
 2) 납입 시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여금에 대하여는 수령 시 과세하지 않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과세제외하고, 미국은 연금소득에서 제외·차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 세후소득에서 납입한 기여금, Roth 계정의 적격분배금 등을 명시함
 3)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부득이한 사유 등 인출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함(세율: 연령에 따라 3~5%, 종신연금은 4%)
 4)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과세와 15% 세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5) 일시금은 보통 직접보험, 연금공고, 연금펀드 또는 리스터연금을 60세(또는 62세) 이후 연금 적립액의 30%(2005년 이전 계약은 20%)까지만 인출 가능하고, 이후 잔여자산은 연금급여로 받아야 하며, 휘롭연금은 일시금 인출이 불가능함
 6) 변동급여(drawdown)는 적립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주식 및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수령금액이 유동적일 수 있음

자료: 본문 내용 요약·정리

2. 시사점

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1) 조세지원 한도금액 및 공제율 조정

- OECD의 최근 자료²⁷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적·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인 42.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현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71) OECD(2021b), p. 141

- 우리나라는 연금 납입단계에서의 조세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연금 기여금에 대한 조세지출의 GDP 비중은 2017년 0.16%에 비해 2021년 0.22%로 증가하였지만, 미국, 독일, 영국의 1.0%, 1.1%, 0.9%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

〈표 V-5〉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조세지원 비교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영국
	2017	2018	2021(잠정)			
조세지출 GDP 비중	0.16	0.20	0.22	1.0	1.1	0.9

주: 1. 미국, 독일, 영국의 조세지원율은 2018년 기준, 조세지출 GDP 비중은 2017년 기준임
 2. 한국의 조세지출 GDP 비중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지출을 합계를 기초로 산출함

자료: OECD(2021b), p. 201; KOSIS, 주요지표(연간지표), <https://kosis.kr/>;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정부는 2022년 6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 및 수익률 제고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확대하였음²⁷²⁾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현행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개정된 기여금 한도를 기준으로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조세지원 대상 기여금 한도액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음

272) 기획재정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GODEPRT&difGovDepart1=DIFGODR001&difSer=218733df-91c4-4698-bdeb-941b448c0cfa&temp=2023&temp2=HALF001>, 검색일자: 2023. 3. 27.; 세액공제한도 확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함. 1,200만원 한도 적용 대상 연금소득은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부금과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비과세 개인연금은 제외)임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통합한도로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9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조사대상국의 경우 납입한도와 조세지원 대상 한도를 구분하지 않으며, 조세지원 방식은 소득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통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연간 GBP 40,000인데, 이는 한화 약 61,797,000원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조세지원 대상 한도금액이 상당히 큰 수준임²⁷³⁾
 -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의 근로자 기여금 소득공제 한도는 USD 22,500, IRA 납입한도가 USD 6,500로 한화로 각각 28,530,000원과 8,242,000원 수준임²⁷⁴⁾
 - 독일은 퇴직연금의 근로자 기여금 한도액이 EUR 7,008, 리스터연금 EUR 2,100, 뤼프연금 EUR 25,787로 한화 9,564,000원 2,866,000원, 35,193,000원 수준임²⁷⁵⁾

〈표 V-6〉 사적연금 조세지원 대상 납입한도 비교

구분		납입한도(연)	지원 방법 (공제율/공제한도)	조세지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	
한국		KRW 18,000,000	세액공제 (15%/12%)	KRW 9,000,000	
미국	401(k)	USD 22,500 (USD 30,000) ²⁾	소득공제	USD 22,500 (USD 30,000) ²⁾	
	IRA ¹⁾	USD 6,500 (USD 7,500) ²⁾	소득공제	USD 6,500 (USD 7,500) ²⁾	
독일	기업연금	EUR 7,008	소득공제	EUR 7,008	
	개인 연금	리스터	EUR 2,100	소득공제	EUR 2,100
		뤼프	EUR 25,787	소득공제	EUR 25,787
영국		GBP 40,000	소득공제	GBP 40,000	

주: 1) Traditional IRA를 의미함(Roth IRA 기여금은 소득공제 불가임)

2) 50세 이상인 개인의 한도금액임

자료: 본문 참고하여 저자 작성

273) 환율 1,544.93 적용(2023. 2. 14. 매매기준율임)

274) 환율 1,268 적용(2023. 2. 14. 매매기준율임)

275) 환율 1,364.81 적용(2023. 2. 14. 매매기준율임)

- 우리나라는 현재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계세율이 공제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지원 대상 납입액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면세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납입액 전액을 면세(소득공제)하는 국가에 비해 조세혜택이 적다고 할 수 있음
 -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개인의 한계세율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소득공제 방식인 경우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조세혜택 효과가 커짐
 - 연금 기여금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을 높인다는 장점은 있지만, 연금수령 시기가 임박한 중장년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구간에 속하므로,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기여금을 납입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어짐

- 우리나라의 연금 기여금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요국에 비해 한도금액이 적고 세액공제 방식의 특성상 개인의 한계세율보다 낮은 공제율로 인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에 비해 동일한 금액이라도 조세혜택은 적기 때문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유인이 적음
 - 향후 증가하게 될 노령인구의 빈곤을 해소할 위하여 조세지원 대상 납입한도 및 공제율의 확대가 필요함
 -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이미 한도를 확대하였고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한도 확대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국제적인 조세지원 수준 및 사적연금 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청년 및 저소득층의 가입유도를 위한 지원

- 우리나라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조세지원 방식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나, 현재의 조세지원제도는 납부세액이 미미한 청년층과 저소득층에는 여전히 가입 유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연금저축은 가능한 일찍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길게 할수록 노후소득 보장 효과가 크고 저소득층일수록 연금저축을 통한 노후소득 마련이 절실함
- 따라서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조사대상국의 사례를 보면 고용주 또는 정부의 추가적인 매칭기여를 통해 연금 가입을 유인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음
 -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정부가 세수로 충당하는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보조금은 1인당 금액이 산정되므로 가족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짐
 - 미국의 경우, 2023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부분에 고용주가 그에 상응하는 매칭기여금을 납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는 연금저축을 할 여력이 없는 청년층에 고용주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정부 및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제도는 미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실질적인 추가소득을 발생 시키므로, 환급형 세액공제보다는 적극적인 지원방식이라 할 수 있고 정부의 미래 재정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환급형 세액공제는 과세 미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원 효과는 보조금에 비해서는 적을 수 있으나, 비교적 적은 재정부담으로 연금 가입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중장년층에 대한 추가 공제한도

-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700만원을 한도로 연금저축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2020~202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종합소득 1억원 이하(총급여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허용하였으나, 2022년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추가공제의 적용이 종료되었음

- 조사대상국 중 중·장년층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에서 볼 수 있음
 - 미국은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기여금(catch-up contribution)'이라는 명목으로 401(k) 및 IRA 계좌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추가기여금 제도는 2001년 경제성장 및 조세감면 조정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EGTRRA)에서 도입되었고, 고령 근로자가 은퇴를 위해 더 많은 은퇴자금을 따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임
 - 도입 당시 2010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 연금 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에 따라 영구 규정이 되었음
 - 2022년의 추가기여금은 IRA계좌에 USD 1,000, 401(k) 계좌는 USD 6,500이었으나, 2023년에는 401(k)의 추가기여금 한도를 USD 7,500로 상향조정하였고, 2025년부터는 60~63세인 경우 연 USD 10,000의 추가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금액을 인상하였음

- 중·장년층 추가공제는 은퇴자금 마련에 기간적인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미국도 한시 조치로 도입되었다가 영구법으로 개정되었고, 최근에는 그 금액을 확대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재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층의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필요성과 납입 여유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시기인 만큼 추가적인 공제한도 허용은 은퇴자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4) 분리과세 대상 기준금액 조정

-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수령단계에서 1,200만원까지 3~5%까지 저율 분리과세하고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납입 시 일반적으로 자신의 한계세율보다 적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분적인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율 분리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함

- 2003년부터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므로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는 여전히 제외됨

- 미국, 독일, 영국의 경우, 납입단계에서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 면제되고 수령단계에서만 과세가 이루어짐
 - 미국, 독일, 영국 모두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납입단계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통해 비과세하므로 수령단계에서 부분면세인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움
 - 미국의 Roth 계좌의 경우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수령단계에서 연금소득을 비과세함
 - 독일의 경우 기업연금은 연금급여의 83%만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부분과세 방식임

- 최근 우리나라는 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했지만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은 1,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세액공제 한도 확대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혜택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한도액을 연 2,400만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²⁷⁶⁾
 - 물가상승 및 근로자 평균급여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연금소득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276) 전병욱(2022), p. 164

나. 보조금 지급 등 비조세적 지원 도입 검토

-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하여 독일 리스터연금과 같은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현 세제 외에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이 방법은 개인연금 가입 유인 효과를 통하여 공적연금 의존도를 줄이고 공적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특히 리스터연금과 같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소득계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 소득분배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음
 - 이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우리나라 저소득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봄

- 독일 리스터연금은 보조금 지급형 개인연금제도로 저소득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이들에게 사적연금의 보급이 확대되는 데 큰 역할을 함
 - 리스터연금은 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정액의 기본보조금과 자녀 수(1인당 금액은 정액)에 비례하는 보조금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보조금은 가입자 1인당 기본보조금 EUR 175, 자녀 1인당 자녀보조금 EUR 185 (2008년 이후 출생: EUR 300), 그리고 25세 미만인 경우 EUR 200(1회에 한하여 지급)으로 이루어짐
 - 세제 측면에서 납입 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수령한 보조금 총액을 일정한도까지 비과세(소득공제)하는데, 이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만 중복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적용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은 납입보험료 공제액에도 고세율이 적용되어 감면세액이 수령 보조금보다 클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차액만 환급하여 보조금 수령과 세액 감면의 혜택을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함
 - 리스터연금 총가입자 수(계약 건수)는 도입 이후 감소 추세로 들어선 2018년 이전 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소득계층의 가입 비중이 높다는 것에 주목할 만함

- 2002년 약 332만 명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가 2010년 1,446만 명이 될 때까지 매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고, 증가 속도가 점점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지속해서 늘어나 2017년에는 가입자 수가 1,660만 명을 초과함
- 리스터연금 기여금 납입자 수를 8개의 소득구간별로 집계했을 때, 저소득 3개 구간의 납입자 비중이 2018년 49.1%, 2019년 46.8%를 차지함

〈표 V-7〉 독일 리스터연금의 가입자 수¹⁾

(단위: 천명)

연도	2001	...	2005	...	2010	...	2015	...	2020	...
생명보험	1,400	...	4,524	...	10,484	...	10,996	...	10,687	...
은행저축	-	...	260	...	703	...	804	...	592	...
투자펀드	-	...	574	...	2,815	...	3,125	...	3,297	...
주택연금	-	...	-	...	460	...	1,564	...	1,793	...
합계	1,400	...	5,358	...	14,462	...	16,489	...	16,369	...

주: 1) 총가입자 수에는 휴면계약 상태로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는 상태의 가입자 수가 포함됨
 자료: BMAS, "Statistik zur privaten Altersvorsorge (Riester-Rente) - Entwicklung der Riester-Verträge," <https://www.bmas.de/DE/Service/Statistiken-Open-Data/Statistik-zu-Riester-Vertraegen/statistik-zusaetzliche-altersvorsorge.html>, 검색일자: 2023. 1. 16.

〈표 V-8〉 독일 리스터연금의 연간 소득구간별 기여금 납입자 수

(단위: EUR, 명, %)

연도	2018		2019	
	보험료 납입자	비중	보험료 납입자	비중
~10,000	1,520,035	14.8%	1,443,657	14.1%
10,000~20,000	1,669,100	16.2%	1,559,513	15.3%
20,000~30,000	1,861,494	18.1%	1,782,016	17.4%
30,000~40,000	1,791,229	17.4%	1,761,329	17.2%
40,000~50,000	1,282,444	12.5%	1,332,952	13.0%
50,000~60,000	789,327	7.7%	835,223	8.2%
60,000~70,000	544,837	5.3%	581,819	5.7%
70,000~	822,279	8.0%	928,247	9.1%
합계	10,280,745	100%	10,224,756	100%

자료: Bundesministerium de Finanzen "Statistische Auswertungen zur Riester-Förderung(Auswertungsstichtag 15. Mai 2022 - Beitragsjahre 2018 bis 202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teuern/Steuerliche_Themengebiete/Altersvorsorge/2022-11-15-Statistische-Auswertungen-Riester-Foerderung-bis-2021.html, 검색일자: 2023. 1. 16.

- 개인연금제도가 다층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질에 부합하고, 소득재분배 역할까지 겸하기 위해서는 중·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더욱 실질적 혜택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봄
- 우리나라는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에 있어 소득분배 측면을 고려하여 2013년 3월 이후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오히려 저소득층의 납입비율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²⁷⁷⁾
 - 개인연금은 개인이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상품인 데다가, 납입금액에 비례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다 보니 노후 대비보다는 절세 상품의 성격이 짙어 저소득층 가입 유도 효과가 미미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인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독일 리스터연금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우리나라 세제에 맞게 조정·도입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임

277) 정원석(2018), pp. 82~83

참고문헌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 2017.
- 관계부처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 6. 16.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 노후소득 보장 체계 혁신』, 2021.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2. 7. 21.
- 김동겸, 「독일의 사적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시사점」, 『KIRI 리포트』, 제533호, 보험연구원, 2021, pp. 22~25.
- 김동겸·류건식,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연금 도입과 과제: 독일 뮌헨연금을 중심으로」, 『KI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6호, 보험연구원, 2017, pp. 25~27.
- 김영미, 「독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46집, 2014, pp. 405~430.
- 류건식·강성호, 「OECD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시사점」, 『KIRI 고령화리뷰 Quarterly』, 제35호, 보험연구원, 2020, pp. 1~10.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017. _____,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보험연구원, 2022.
- 성혜영·최옥금·문현경·주은선·이은주·김아람,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 및 시사점 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9.
- 심재진, 「영국의 연금제도 변화와 지방공무원 연금제 개정 동향」, 『국제노동브리프』, 제3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pp. 20~27.
- 우승명, 「독일의 '67세 연금' 도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9권 제3호, 2019, pp. 89~116.

- 유호선·김진수·Christina Hiessl, 『독일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7.
- 이상엽·윤성주,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_____,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7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이상우, 「개인연금의 이해(3):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1. 7. 18., pp. 13~14.
-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II)』, 2021.
- 전병목·김도형,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1) 연금계좌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pp. 26~27.
- 전병욱, 「사적연금의 수령단계의 조세지원 확대방안 분석」, 『세무학연구』, 제39권 제3호, 2022, pp. 145~168.
- 정원석, 「영국 퇴직연금 연금화 수령의무 폐지 이후 가입자 행태」, 『KIRI 리포트』, 제404권, 보험연구원, 2016, pp. 8~16.
- _____, 「영국의 퇴직연금 세제 변화에 따른 적립금 수령행태와 시사점」, 『KIRI 리포트』, 제410권, 보험연구원, 2017a, pp. 1~8.
- _____,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시행 이후 가입률 변화와 시사점」, 『KIRI 리포트』, 제428권, 보험연구원, 2017b, pp. 1~9.
- _____, 「연금저축 세제혜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행태 변화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9권 제3호, 2018, pp. 77~102.
- 정원석·김세중, 「미국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 Enrollment)와 시사점」, 『KIRI 리포트』, 제437권, 보험연구원, 2018, pp. 5~17.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보험연구원, 2017.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14.

- 정인영·정창률·권혁창, 『영국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7.
- 주독일대사관 경제과, 「독일의 공적연금제」, 2018.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 홍범교·박수진·정경화,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세법연구 13-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홍범교·송은주·박수진,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홍원구, 「영국 퇴직연금 자유화 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1-08호, 자본시장연구원, 2021.
- Age UK, *Factsheet 91 - Pension Freedom and benefits*, 2022.
- Bäcker, Gerhard, *New regulations on occupational pensions in Germany*, European Commission, 2017. 1.
- Berner, Frank, Fakultät für Soziologie, and Universität Bielefeld, “Riester Pensions in Germany: Do they substitute or supplement public pensions? Positions in the debate on the new public policy on private pensions,” *German Policy Studies*, 3(3), 2006, pp. 492~534.
- Börsch-Supan, Axel, Tabea Bucher - Koenen, Nicolas Goll, and Christina Maier, *15 Jahre Riester - eine Bilanz*, No 12/2016, Working Papers,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2016.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28. Subventionsbericht des Bundes 2019 - 2022*, 2021.
- Deutscher Bundestag, *Ausschussdrucksache 18(11) 971*, 2017.
- _____, *Aktuelle Fragen zur Finanzi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2022a.
- _____, *Sachstand - Aktuelle Fragen zur Finanzi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2022b.

Deutsche Rentenversicherung, *Versicherte und Rentner: Informationen zum Steuerrecht*, 2022a.

_____, *Von Altersgrenze bis Zeitrente - das Rentenlexikon*, 2022b.

Gale, William G., J. Mark Iwry, and Peter R. Orszag, "The Saver's Credit: Issues and Options," *Tax Notes*, 103(5), 2004. 3. 3., pp. 597~612.

HM Treasury, *Freedom and choice in pensions*, March 2014.

IOPS, *Countries profiles - GERMANY*, October 2019.

IRS, *Pension and Annuity Income*, 2021.

_____, *Contributions to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IRAs)*, 2022.

OECD,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 OECD and EU Country Profiles*, 2015.

_____,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2019.

_____, *Financial Incentives for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2020; 2021a.

_____, *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AND G20 INDICATORS*, 2021b.

_____, *Pension at a Glance 2021: Country Profiles - United Kingdom*, 2021c.

_____, *Annual survey on financial incentives for retirement savings - OECD Country Profiles*, 2022a.

_____, *OECD Reviews of Pensions Systems: KOREA*, 2022b.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advisor.fss.or.kr/>

기획재정부, <https://whatsnew.moef.go.kr/>

_____, <https://www.moef.go.kr/>

KOSIS, <https://kosis.kr/>

ABA, <https://www.aba-online.de/>

Betriebliche Altersvorsorge24, <https://www.betriebliche-altersvorsorge24.info/>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https://www.gesetze-im-internet.de/>

BMAS, “Förd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https://www.bmas.de/>
BPB(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s://www.bpb.de/>
Bundesfinanzministerium,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
Dentons Pensions, <https://www.dentonspensions.co.uk/>
Deutsche Rentenversicherung, <https://rvaktuell.de/>
Deutsche Rentenversicherung,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Deutscher Bundestag, <https://www.bundestag.de/>
DQYDJ, <https://dqydj.com/>
Fidelity, <https://www.fidelity.com/>
Finanzen, <https://www.finanzen.de/>
GOV.UK, <https://www.gov.uk/>
IBFD, <https://research.ibfd.org/#/>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
IRS, <https://www.irs.gov/>
Money Helper, <https://www.moneyhelper.org.uk/>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Procontra, <https://www.procontra-online.de/>
Riester-Rente.net, <https://www.riester-rente.net/foerderung/auszahlung/>
Rürup-Rente.net, <https://www.ruerup-rente.net/>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
The Pension Regulator, <https://www.thepensionsregulator.gov.uk/>
Transparent Beraten, <https://www.transparent-beraten.de/>
UK Parliament(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

세법연구 22-05
주요국의 사적연금 과세제도 연구

발 행 2022년 12월 30일
저 자 홍범교 · 송은주 · 김효림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미 래 기 획
인 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ISBN 979-11-6655-213-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